

사람이 떠나지 않은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제언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도시전략지원단



연구 요약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고령자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예상되는 지역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과제 제안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정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노인의 주거생활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심리적 지지기반인 이웃,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일상생활을 구성해 온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인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접목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2. 주요연구 결과

2.1.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

고령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이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거주기간이 길고 시설이 노후 되어 주택만족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고령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서 고령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개조와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고령가구의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었다.

2.2. AIP이론과 실현방안

노후에도 기존에 사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거주형태이며, AIP와 관련해서도 기존 거주 공간에 최대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AIP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서 위험요소를 제거 혹은 개선하고, 주택 내 각종 설비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기능이 저하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등 AIP를 위해서는 단순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발굴과의 연계를 통하여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라는 두 요소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3. 고령자 대응 주거복지정책

국내 노인 주거 지원 흐름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강조하던 것에서 노인용 주택공급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노인 대상 주거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관련 계획이나 주거 관련 종합계획에서도 노인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주거 공급은 노인 부양을 강조하는 제도에서 노인에게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는 물론 민간에 의한 노인용 특화단지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노인만을 위한 밀집된 주거 제공이 관리나 케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낙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세대 분리로 인한 공동체성 저해의 문제성 또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처럼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활용하고,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 등 고령자의 욕구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이 요구된다.

2.4. 과천시 고령자주거와 서비스 지원현황

노인복지와 관련된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헬스케어 스마트 실버주택단지 조성, 요양형 건강센터 조성,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고, 무장애 원스톱 서비스 지원, 융복합형 노인웰니스센터 조성, 과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파악되었다.

‘과천시 시정설계 2021’에서는 시립요양원 건립, 효행장려금 및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2년 과천시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총 12건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계획을 추진예정이다.

2.5.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과천도시공사가 주최한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영역에서 첫째, 양적으로 부족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자 대응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발표되었다. 그 실행과제로 매입임대 활용과 정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중간계층을 위한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용 주택개발,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노인 주택개조 사업, 제3섹터와의 협력 등 공공-민간 기관의 협업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자원이 연계된 돌봄과 요양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지원 사례를 소개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과천시노인복지관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과천시 내 노인복지관 설치 목표를 3개소로 제시하고, 신노년(新老年)이 이용하게 되는 평생학습 총량제 도입과 평생교육 사례관리가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고령자가 가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 되는 ‘탈시설화’를 통한 다양한 여가 선택지 제공이 제시되었다.

3. 정책제언

① 실질적인 노인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① 과천시 노인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2021년 11월 기준 과천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10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노인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②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가입을 통하여 고령친화도시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③ 노인주거복지행정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과천시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 「주거기본조례」,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보급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노인주거복지 행정의 바탕이 되는 과천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② 고령친화적인 주택과 주거시설 보급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과천시는 2020년 3월부터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적용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아 고령친화적인 주택 등 주거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아동,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는 설계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이후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비나 공사에 필요한 재정투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적 주택개조 활성화

우리시 통합 돌봄 사업 추진 또는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노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사는 노후주택을 고령친화적 주택으로 재탄생시켜 노인거주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주거공간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제시와 지속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고령자용 공공주택공급 확대

자치단체의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매입임대, 돌봄·의료서비스 연계, 민간협력방식을 활용한 고령자용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③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① 고령친화적인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고령자 적합 주택이나 무장애 주택의 요소를 일정비율 이상 반영할 시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을 제시한다.

②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독 경제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우리시가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다양화·세분화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받는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구독 경제적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제안한다.

④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

① 주거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우리시에서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은 2022년 신설 예정인 주거복지센터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주거복지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례관리는 과천시,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회적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내실화될 수 있다.

② AIP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노인 거주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례관리자로서는 주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사가 가장 적임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이 현장에서 실

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에 더해 고령자 주거 지원정책과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에 대한 전문지식, 이외에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시공 관련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목 차 ■

★ 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 ★	5
제1절 노인가구 주거특성	5
제2절 소결	11
★ 제3장 AIP이론의 대두와 현황 ★	15
제1절 AIP개념	15
제2절 노화에 따른 적절한 주거환경	16
제3절 AIP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19
★ 제4장 고령자 대응 주거복지정책 동향 ★	21
제1절 국내 주거지원의 흐름	21
제2절 노인복지시설	26
제3절 공공임대주택	30
제4절 주거환경 개선 지원	41
제5절 주거지원서비스의 연계 현황	48
제6절 소결	62

★ 제5장 과천시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현황 ★ 65

제1절 노인복지 관련 자치법규 65

제2절 노인복지 관련 주요 사업계획 67

제3절 노인복지시설 85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86

★ 제6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 89

제1절 전문가 의견 89

제2절 지역사회 의견 102

★ 제7장 결론 ★ 105

제1절 종합 105

제2절 정책제언 109

★ 참고문헌 ★ 118

◆ 표목차 ◆

〈표 2-1〉 노인가구 주거실태	5
〈표 2-2〉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6
〈표 2-3〉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임대주택 거주율 및 거주 유형	6
〈표 2-4〉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공공임대 거주 유형	7
〈표 2-5〉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	7
〈표 2-6〉 노인 가구 추계	9
〈표 2-7〉 노인 1인 가구의 거주 유형	9
〈표 2-8〉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평가	10
〈표 2-9〉 혼자 사는 노인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2020)	11
〈표 2-10〉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주거실태 주요 지표	12
〈표 3-1〉 성공적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4원칙	20
〈표 4-1〉 2016년~2020년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2
〈표 4-2〉 주요 주거정책 관련 계획의 노인 주거지원 내용	24
〈표 4-3〉 노인 관련 주요 계획의 주거지원 내용	25
〈표 4-4〉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규정	27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규정	27
〈표 4-6〉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28
〈표 4-7〉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30
〈표 4-8〉 공공임대주택별 노인 입주자격	31
〈표 4-9〉 국내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33
〈표 4-10〉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36
〈표 4-11〉 주거복지동 입주자격	36
〈표 4-12〉 케어안심주택 ‘늘 행복 프로젝트’ 서비스 지원체계	38
〈표 4-13〉 노인 공동체주택 공급현황(2021년)	39
〈표 4-14〉 사회주택 사업유형	40
〈표 4-15〉 사회주택 지원현황	40

〈표 4-16〉 노인특성에 따른 주택개조 요구	41
〈표 4-17〉 주거급여 개편전후 비교	42
〈표 4-18〉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43
〈표 4-19〉 2021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43
〈표 4-20〉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44
〈표 4-21〉 수선유지급여 장애인·노인 추가지원 대상자	44
〈표 4-2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44
〈표 4-23〉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45
〈표 4-24〉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2011년)	45
〈표 4-25〉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47
〈표 4-26〉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47
〈표 4-27〉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2021. 12월)	55
〈표 4-28〉 서울·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현황(2021. 12월)	59
〈표 4-29〉 주거복지사와 주택관리사 비교	61
〈표 5-1〉 과천시 고령화 추이(2017년~2021년 10월)	71
〈표 5-2〉 과천시 경로당 및 노인대학	85
〈표 5-3〉 과천시노인복지관	85
〈표 5-4〉 구세군과천양로원	85
〈표 5-5〉 장기요양원	86
〈표 5-6〉 과천시 노인대상 식사지원 서비스 현황	87
〈표 6-1〉 노인세대의 자산구성	97
〈표 6-2〉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관련 현황	98
〈표 7-1〉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	111

✦ 그림목차 ✦

〈그림 1-1〉 기대여명, 고령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1
〈그림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2
〈그림 1-3〉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65세 이상 고령인구	8
〈그림 2-2〉 고령자 1인 가구	8
〈그림 2-3〉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13
〈그림 4-1〉 국내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의 전개	23
〈그림 4-2〉 한국과 미국,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정원 비교(2019)	29
〈그림 4-3〉 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34
〈그림 4-4〉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35
〈그림 4-5〉 노인 통합돌봄 모델안	37
〈그림 4-6〉 늘 행복 프로젝트 주요내용	38
〈그림 4-7〉 주거복지로드맵(2.0) 노인 주거지원 확대	48
〈그림 4-8〉 노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주택지원)	49
〈그림 4-9〉 노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금융지원)	49
〈그림 4-10〉 복지용구 구입품목(10개)	50
〈그림 4-11〉 복지용구 대여품목(6개)	51
〈그림 4-1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2개)	51
〈그림 4-13〉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업무절차	52
〈그림 4-14〉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	52
〈그림 5-1〉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 목표 및 추진전략	68
〈그림 5-2〉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68
〈그림 5-3〉 보건복지안전 부문 목표 및 추진전략	71
〈그림 5-4〉 보건복지안전 부문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72
〈그림 5-5〉 과천시 2021년 시정 역점시책	74

<그림 5-6> 시립요양원 조감도	75
<그림 5-7> 행복드림센터 건립 조감도	75
<그림 6-1> 노인가구 추이 및 유형별 구성비	90
<그림 6-2> 노인가구 자가점유율 및 주택점유형태	90
<그림 6-3> 세부항목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91
<그림 6-4> 노인의 희망거주형태	92
<그림 6-5> 고령자 주택 ‘유이마루 타마다이라는 숲’ 평면도	93
<그림 6-6> 2021년 충북 독거노인 주거 실태조사	94
<그림 6-7> 부천시 선도사업 추진 비전 및 목표	95
<그림 6-8> 노인주거시설 분포도	96
<그림 6-9> 위스테이 사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관협력)	97
<그림 6-10>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연구	98
<그림 6-11> 미국의 Housing Voucher제도	99
<그림 6-12>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	100
<그림 6-13>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률	101
<그림 6-14>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102
<그림 7-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및 주요내용	110
<그림 7-2> 노인주거 소득수준 및 공급주체별 분류	113
<그림 7-3>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사업	114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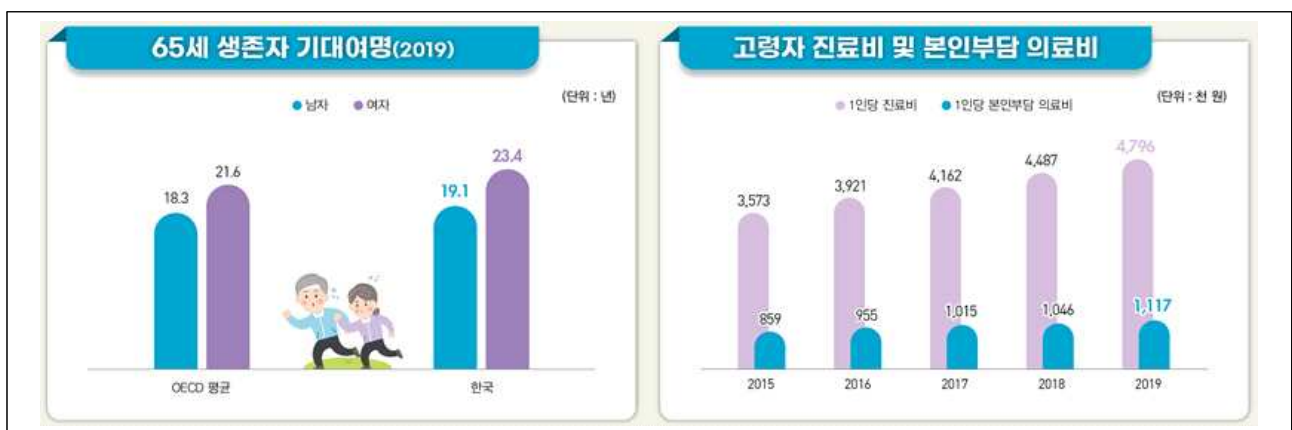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2명을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 급감과 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의 노인 인구 편입,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에 관한 관심 고조로 인한 수명 연장 등으로 20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¹⁾ 진입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 더 높은 수준으로 2021년도 ‘고령자 통계’에서 조사되었다.

이미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고령화율 14%를 초과하고 있고, 과천시 역시 2021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14.2%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령자 가구의 증가, 가족부양의식 감소 등으로 공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출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고령자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1-1> 기대여명, 고령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1) 한 나라의 인구가 어떤 유형을 띠고 있는 가는 UN이 정한 인구유형 분류기준이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만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인 나라를 유년인구국, 4~7% 미만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 7% 이상인 나라를 노년인구국으로 분류하고, 노년인구국은 다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에는 정책 비전을 모든 국민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구현’ 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건강한 노후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인 역할 지원’ 을 목표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 내실화를 통한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기반 건강·돌봄서비스 확충,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교통 여건 조성 및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통한 고령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을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8쪽

더욱이 고령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 되어 거주자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고령자는 노인 전용주택 또는 노인시설 입소보다는 가능한 익숙한 장소인 살던 곳에 남아서 생활하는 Aging in Place(이하 ‘AIP’)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자들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AIP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AIP 실현을 위해서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과 운동성이 떨어지는 초고령자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서비스주택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령자서비스주택은 노인 스스로 능력을 활용하여 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입주를 최대한 지연 또는 예방함으로써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AIP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노인주택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는 과천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있고,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대규모의 도시개발 등 때문에 노인가구의 지속적인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주거환경 및 삶의 방식의 변화를 도시기반 시설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보고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고령자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예상되는 지역문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과제 제안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정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노인의 주거생활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심리적 지지기반인 이웃,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일상생활을 구성해 온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접목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도시개발이라는 요인에 의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과천시 원도심과 새롭게 개발될 지역 등 과천시의 행정구역 전체와 과천의 노인주거실태 현재 상황부터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거실태조사결과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 (2021. 9월)에서 발표된 전문가의 발제 고찰을 통해 노인가구의 실태, 특성, 노인가구 및 일반가구의 주거특성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AIP의 개념 및 국제적 논의, 노화에 따른 적절한 주거환경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AIP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노인주거지원 흐름,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원서비스 연계 현황 등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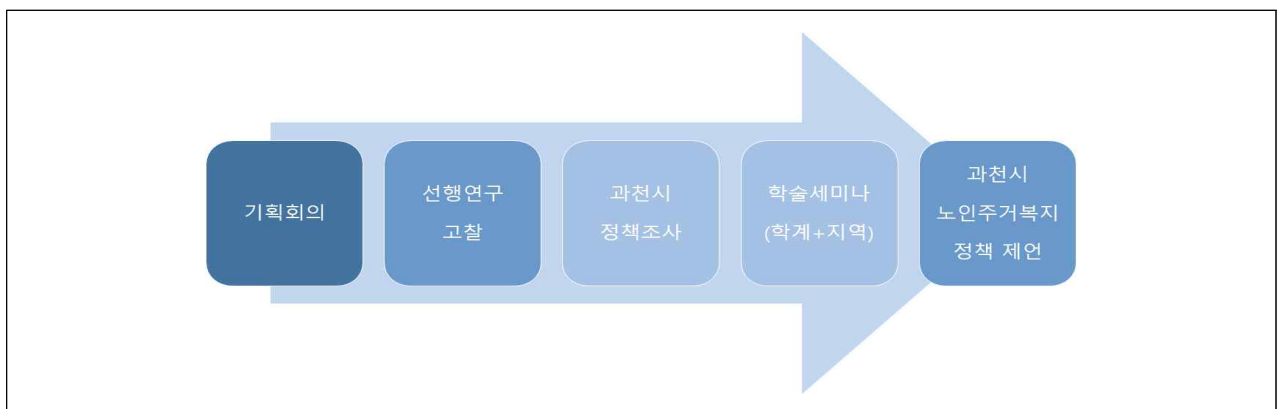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과천 노인거주 지원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사업계획,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서비스를 총 정리하여 과천시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제6장에서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 (2021. 9월)와 ‘과천시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학술세미나’ (2021. 12월)에서 제안된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와 세미나에 참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진행한 분석과 지역 요구에 바탕을 둔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방안’ (주보혜, 이선희, 임덕영, 김수정, 김혜진, 2020)을 기초로 연구되었고, 참고문헌을 비롯한 선행연구가 많은 부분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그림 1-3〉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연구 흐름도



제2장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

제2장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

제1절 노인가구 주거특성

1.1. 일반가구 대비 노인가구 주거특성: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 원),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Price Income Ratio / 이하 ‘PIR’ 로 표기) 및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 (Rent to Income Ratio / 이하 ‘RIR’ 로 표기)이 각각 9.7배, 29.9%로 일반가구의 5.5배, 16.6%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 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노인가구 주거실태

구분		주거 이동률	주거비(중위수)		주거수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면적	1위	2위
노인	'19	13.8%	29.6%	8.4배	3.9%	45.3㎡	개량·개보수 (26.5%)	구입자금 (18.2%)
	'20	14.7%	29.9%	9.7배	3.4%	45.2㎡	구입자금 (24.7%)	개량·개보수 (21.8%)
일반	'20	37.2%	16.6%	5.5배	4.6%	33.9㎡	구입자금 (34.6%)	전세대출 (24.5%)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2021. 8. 13.).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쪽

노년기의 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주택의 점유 형태는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이에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가, 월세, 전세의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자가 거주는 노인가구가 75.4%, 일반가구가 57.9%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40.5%, 다세대 주택 7.9%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가구는 아파트 거주가 51.1%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 31.0%, 다세대 주택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가구)

구분	노인가구	일반가구
단독주택	45.9	31.0
아파트	40.5	51.1
연립주택	2.2	2.1
다세대주택	7.9	9.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8	1.6
주택 이외 거처	1.7	4.8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그 유형을 파악한 결과, 노인가구는 전체의 24.6%, 일반가구는 42.1%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유형별로는 두 집단 모두 민간임대 거주율이 타 임대 유형보다 월등히 높다. 이 중에서 민간임대 거주율은 노인가구가 70.7%, 일반가구가 86.4%로 노인가구에 비해 일반가구가 약 16% 더 높다. 공공임대 거주율은 노인가구는 27.7%, 일반가구는 11.9%로 일반가구가 노인가구의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3>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임대주택 거주율 및 거주유형

(단위: %)

구분	임대주택거주	민간임대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타임대
노인가구	24.6	70.7	27.7	1.6	0.1
일반가구	42.1	86.4	11.9	1.4	0.3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공공임대 거주자 중 세부 임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는 국민임대 46.2%, 영구임대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국민임대 거주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영구임대가 26.3%로 확인되었다.

<표 2-4>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공공임대 거주 유형

(단위: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노인가구	39.7	46.2	3.3	1.4	9.4
일반가구	26.3	50.0	8.2	2.5	12.7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을 비교한 결과, 노인가구의 경우 15년 이상 한 집에서 장기거주하는 비율이 43.3%로 나타났지만, 3년 미만 거주 비율은 14.6%에 그쳤다. 반면 일반가구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아 노인가구와 정반대 특성을 보였다.

<표 2-5>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

(단위: %)

구분	노인가구	일반가구
3년 미만	14.6	37.2
3~5년	10.9	15.2
5~10년	16.8	19.0
10~15년	14.2	10.9
15년 이상	43.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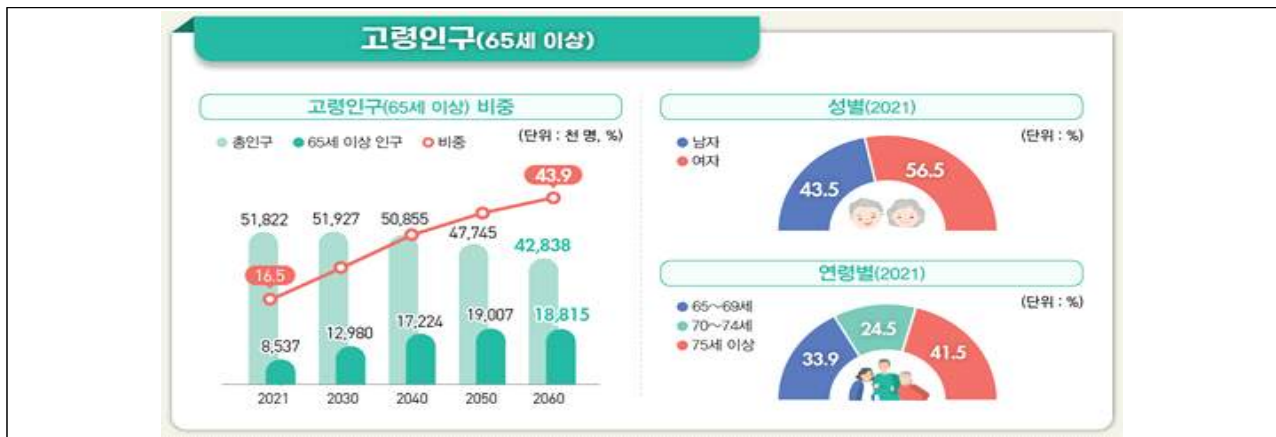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련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8. 13.)에 따르면 주택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및 단열 상태, 환기 상태 등 전반적인 주택 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를 비교한 결과,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가구(3.00점)가 노인가구(2.92점)보다 전반적으로 근소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1.2. 혼자 사는 노인가구 특성: 2021 고령자 통계

통계청이 배포한 「2021 고령자 통계」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였다.

<그림 2-1> 65세 이상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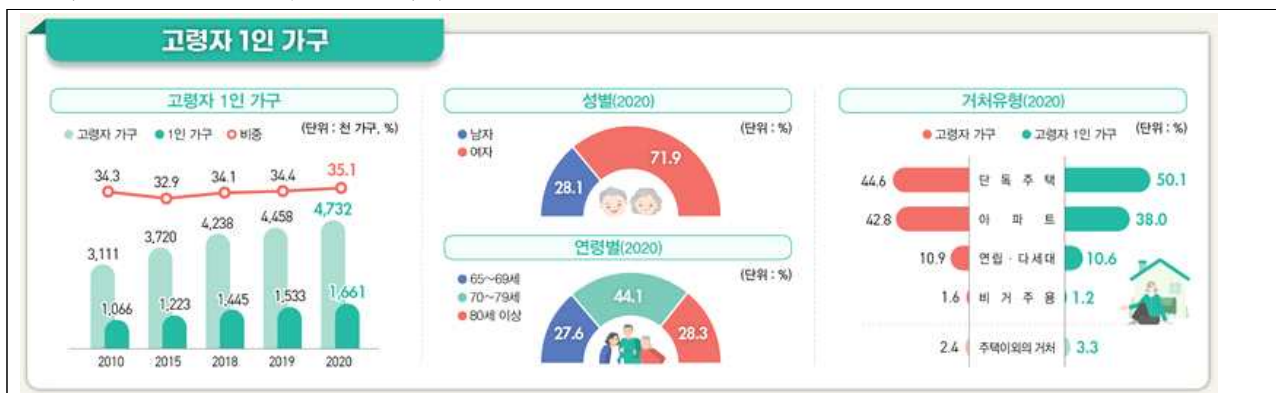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7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20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1인 가구 중 남자 비중은 2021년 28.3%에서 2047년에는 35.9%로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71.7%에서 6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2> 고령자 1인 가구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표 2-6〉 노인가구 추계

(단위: 천가구, %)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00	1,734	543	31.3	14.7	85.3	34.6	52.4	13.0
2005	2,448	783	32.0	17.0	83.0	30.0	53.1	16.8
2010	3,111	1,066	34.3	20.3	79.7	25.6	52.8	21.6
2015 ¹⁾	3,720	1,223	32.9	24.4	75.6	25.6	48.8	25.6
2018	4,238	1,445	34.1	26.6	73.4	26.0	46.4	27.6
2019	4,458	1,533	34.4	27.4	72.6	26.2	45.4	28.4
2020	4,732	1,661	35.1	28.1	71.9	27.6	44.1	28.3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2020년 노인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50.1%)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남자(55.1%)가 여자(48.2%)보다 높고, 아파트거주 비중은 여자(39.9%)가 남자(32.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낮았다. 노인 1인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중이 전체 노인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2-7〉 노인 1인 가구의 거처 유형(2020)

(단위: 천명, 천가구, %)

	전체	소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주 택 이외의 거 처
				소계	단 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 거주용	
노인 1인 가구	1,661	100.0	96.7	100.0	50.1	38.0	10.6	1.2	3.3
남 자	466	100.0	94.1	100.0	55.1	32.9	10.3	1.7	5.9
여 자	1,194	100.0	97.7	100.0	48.2	39.9	10.8	1.1	2.3
65~69세	458	100.0	95.0	100.0	46.2	40.4	11.8	1.7	5.0
70~79세	733	100.0	97.0	100.0	48.4	39.0	11.3	1.2	3.0
80세 이상	470	100.0	97.8	100.0	56.5	34.2	8.4	0.9	2.2
노인가구	4,732	100.0	97.6	100.0	44.6	42.8	10.9	1.6	2.4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혼자 사는 노인의 17.1%만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전체 노인(24.3%)에 비해 주관적 건강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 검진 79.3%, 적정 수면 74.2% 순으로 정기 건강검진,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이 높은 반면, 규칙적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낮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노인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5%p 이상 낮았다.

〈표 2-8〉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평가

(단위: %)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혼자 사는 노인	2016	16.9	2.0	14.8	28.1	55.0	44.1	10.9
	2018	17.1	1.9	15.1	28.4	54.5	42.7	11.8
	2020	17.1	2.1	15.0	33.3	49.5	42.5	7.0
	남 자	24.8	2.5	22.3	36.1	39.1	34.7	4.4
	여 자	14.8	2.0	12.8	32.4	52.7	45.0	7.7
	65~69세	23.5	1.7	21.8	44.5	32.0	28.0	4.0
	70~79세	19.1	2.7	16.4	33.5	47.4	41.6	5.8
	80세 이상	10.1	1.6	8.5	25.4	64.4	53.8	10.6
전체 노인(2020)		24.3	3.0	21.3	37.3	38.4	33.2	5.2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혼자 사는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식도는 각각 38.5%, 35.5%로 전체 노인 보다 4%p 이상 낮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노인과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은 오히려 혼자 사는 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혼자 사는 노인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2020)

(단위: %)

		계	느낌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느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전반 생활	혼자 사는 노인	100.0	38.5	6.8	31.7	61.5	45.5	16.0
	남 자	100.0	44.6	8.2	36.4	55.4	40.3	15.1
	여 자	100.0	36.5	6.3	30.2	63.5	47.2	16.3
	65~69세	100.0	43.3	8.3	35.0	56.8	46.1	10.7
	70~79세	100.0	37.3	7.3	30.0	62.7	43.9	18.8
	80세 이상	100.0	36.9	5.0	31.9	63.1	47.4	15.7
	전체 노인	100.0	42.7	6.2	36.6	57.3	44.5	12.8
가정 생활	혼자 사는 노인	100.0	35.5	7.3	28.2	64.4	45.2	19.2
	남 자	100.0	38.9	9.0	29.9	61.1	42.2	18.9
	여 자	100.0	34.5	6.8	27.7	65.5	46.2	19.3
	65~69세	100.0	39.3	10.2	29.1	60.7	46.4	14.3
	70~79세	100.0	34.2	7.2	27.0	65.8	42.8	23.0
	80세 이상	100.0	36.9	5.5	29.4	65.1	47.8	17.3
	전체 노인	100.0	39.9	7.2	32.8	60.1	45.0	15.1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제2절 소결

본 장에서는 노인가구 현황과 노인가구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와 「2021 고령자 통계」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노인가구 중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노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이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거주기간이 길고 시설이 노후 되어 주택만족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고령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노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개조와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0〉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주거실태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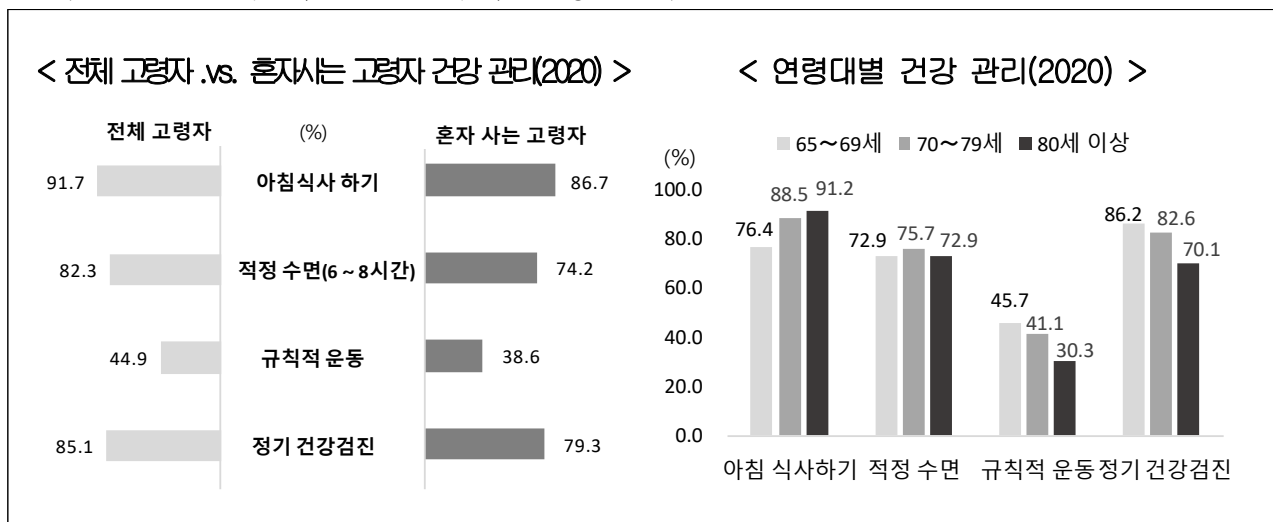
지 표 명			일반가구	노인가구
주거 안정성	자가 점유율(%)		57.9	75.4
	자가 보유율(%)		60.6	77.2
만족도	주택 만족도(4점 만점)		3.00	2.92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2.97	2.93
주거비 부담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7.7	10.1
	자가가구의 PIR(배) ¹⁾		5.5	9.7
	임차가구의 RIR(%) ²⁾³⁾		16.6	29.9
주거 이동성	평균 거주기간(년)	전체가구	7.6	14.8
		자가가구	10.6	17.2
		임차가구 ⁴⁾	3.2	6.5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37.2	14.7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6	3.4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1.6	1.8
	1인당 주거면적(m ²)		33.9	45.2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87.7	91.2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2021. 8. 13.).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3~14쪽 재구성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인가구의 35.1%가 1인 가구이며, 그 비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50.1%)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평가로 혼자 사는 노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1%로 전체 노인(24.3%)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의 항목으로 조사한 전반적인 건강관리 실천율은 혼자 사는 노인이 전체 노인보다 낮았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이 높은 반면,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을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노인 친화적인 주택개조 사업 확대, 정기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을 지원하는 연계서비스 확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3>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제3장

AIP이론의 대두와 현황

제3장 AIP이론의 대두와 현황

제1절 AIP개념

앞장에서 조사된 노인주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으로 주거 이동성은 낮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시설은 노후 되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세대 연계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노인의 주거에 대한 요구는 글자 그대로 AIP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노인주거정책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AIP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UN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권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주거를 국민의 권리로 확인한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기본법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주보혜 외, 2020: 25-26).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거주자의 노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노인은 노후에 노인 전용 주택 또는 노인시설로 입소하는 것이 아닌 에이징인플레이스를 원한다(오찬옥, 권현주, 김혜연, 2021: 37).

이렇듯 고령화로 인해 노인 주거권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주거 계획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주거는 개인과 환경의 조화를 만족하고(Personal- Environment), 경제적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며(Affordable), 접근 가능성이 높고(Accessible), 사회 참여

가 보장되어야 한다(Hooyman, Kiyak, 2011; 송인주, 2018: 14).

과거 시설 중심 보호가 일반적이었던 노인주거에 대한 담론은 최근 지역사회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성 훼손 및 과도한 의료처방과 사회적 입원 등 시설수용의 불합리성,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던 노인 에 대한 인식변화 및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비용 부담 의 증가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유진, 2018: 45).

시설 거주와 대비되는 개인적 공간, 개인 영역에서의 노년생활을 추구하는 양식 인 AIP는 학술 영역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진 개념이다. AIP는 가능한 한 일생 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 또는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는 것 혹은 시설 거주 보다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 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AIP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과 개인의 정체성, 경험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AIP를 실현한다는 것은 주택의 물리적 형태 를 변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노인의 생활과 신체적·인지적·관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제2절 노화에 따른 적절한 주거환경

2.1. 고령화에 따른 주거 욕구 변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제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요구는 변화하고, 노화로 인한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노인의 안전 사고는 기존의 본인 주택에서 발행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가 빈번하였다.

한편 연령의 증가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는 주로 기억력, 지각기능, 행동의 조 직화, 방향감각 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에게 찾아온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독립성 감소와 기능상실이라는 상 황을 만들어 낸다. 노년기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은 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이동권 측면에서도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포괄한다.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주보혜 외, 2020: 32).

2.2. 노인의 위한 주거형태

노인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가 제공되고 있는데 기능상태 및 도움 제공자 여부 등에 따라 시설 거주, 서비스 지원 주거, 재가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요양시설을 비롯한 시설 거주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자율성 및 독립성 저하, 국가적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한편 다양한 노인의 주거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케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비스 지원 주거’를 들 수 있다. 서비스지원 주거는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 및 쇠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노인들이 집합주택 내 독립적 공간에서 거주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이 있다(주보혜 외, 2020: 32).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로 미국의 은퇴주거단지(연속적 케어 은퇴 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이하 ‘CCRC’)를 제시한다. CCRC는 현재 3,000여 개가 보급되어 운영 중이다. CCRC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요양계약에 따라 독립주거,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주거까지 한 장소에서 입주민의 노화 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윤희, 이승혜, 김주성, 2018: 186).

CCRC에서 배울 수 있는 고령자주거복합 시설 설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배치의 유형은 교외 분산형과 도심 집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외 분산형은 저층의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지원시설이 집합된 건물이 단지의 중심부에 한 곳 이상 배치되는 방식이며, 도심 집중형은 높은 지가와 주변 시설들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성되는 방식이다.

둘째, 지원시설로부터의 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의료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장 먼 거리에, 치매 관리와 같이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배치되는 방식 등이다.

셋째, 지원시설은 운동 공간, 위생 공간, 취미 공간 등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문화 공간, 방문객 공간 등이 그다음, 의료지원공간은 외부 전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넷째, 현관인접 공간은 출입 부분에 주방이나 세탁실 같은 서비스 공간을 배치하여 생활에 편리성을 높이고, 특히 욕실은 바로 출입문 쪽에 배치하여 돌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CCRC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시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같은 구역 내에서 이주한다는 점에서 AIP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의 AIP 추세에 따라 주택이 고령자의 욕구에 맞추도록 변화하여 ‘Aging in Community’가 가능하도록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구축 정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노후에도 기존 거주하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령자가 희망하는 거주형태이다. AIP와 관련해서도 기존 거주 공간에 최대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AIP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서 위험요소(높은 문턱이나 계단, 화장실이나 욕실 등)를 제거 혹은 개선하고, 주택 내 각종 설비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김혜신, 박수빈, 2019: 20). 또한, 기능이 저하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개인 및 국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3.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감소, 안정성 강화는 노인의 자립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주보혜 외, 2020: 39).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구축을 위해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실태와 요구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획일적이어서는 안되며, 노인의 제반 조건, 생활 경험을 고려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2.3.1.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무장애 설계 혹은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고도 불리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1974년 개최된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건축학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서유진, 2018; 김혜신, 박수빈, 2019).

문턱을 없애거나 휠체어 이동을 위해 통로의 폭을 조절하는 등의 주택 내 공간 요소에 관련한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건축·도로·공공시설 등 도시 전반의 영역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주보혜 외, 2020: 40).

2.3.2.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나 연령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설계 방안으로(박은정, 채철균, 2020: 42), (1) 공평한 사용, (2) 사용의 유연성,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4) 쉽게 알 수 있는 사용정보, (5) 사고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포용, (6) 최소한의 신체적 부담, (7)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이라는 7가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주보혜 외, 2020: 39).

제3절 AIP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AIP를 위해서는 단순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역 자원 발굴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건축(주택) 정책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즉 개별 제도를 개선하거나 몇 개의 급여를 도입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직하는 수준을 넘어, 각각의 정책 및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주거복지의 주거와 서비스의 연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AIP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라는 두 요소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김상호는 성공적인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위한 원칙으로 적절성,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이라는 4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표 3-1〉 성공적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4원칙

주요 원칙	내용
적절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제공하였는가
통합성	통합된 체계 내에서 행정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고, 최일선의 주거지원 전달체계가 다수의 서비스를 통합적·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가
접근성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 특히 저소득 가구 및 주거약자 거주 가구가 주거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전문성	주거지원의 전달이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거 분야의 경우 건축 및 복지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주거지원 담당자들이 적합한 전문성을 지니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45쪽

서비스 전달체계를 최적화하는 데는 무엇보다 통합성에 중점을 둔 연계 관련 서비스의 개발과 조직화가 강조되고 있다. 분절된 체계 아래에서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최적화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중간 지원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다.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주택 중심, 임대주택 건설 혹은 공급 중심이었던 점과는 다르게 앞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병순과 황원실이 “공공(행정) 영역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했다(정병순, 황원실, 2018: 7).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공공 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와 상호 교류를 지원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인프라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 지역 개발 에이전시(Local development agency) 등으로도 표현되며, 민간 조직 및 공공 조직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서수정 외, 2014: 27).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지역의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유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4장

고령자 대응 주거복지정책 동향

제4장 고령자 대응 주거복지정책 동향

이 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지원과 연계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노인 대상 주거복지정책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가족에 대한 주택 공급으로 나뉘어 전개되어 왔다(정소이, 권혁삼, 박준영, 최원철, 2018: 47). 노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중심의 시설 공급에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이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주보혜 외, 2020: 55).

아래에서는 먼저 시간 흐름에 따른 국내 주거지원의 변화와 노인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등 주택 공급정책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자료조사 결과를 실었다.

제1절 국내 주거지원의 흐름

노인복지시설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로, 그 이전의 고령자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접근에 국한된 시설제공에 집중되어 있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언급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분류와 정의 등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시설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고령자 주거를 노인복지시설로 명시하여 사회복지의 주요정책으로 포함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법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설치·관리 및 공급 등은 주택법 준용 등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정소이, 2021: 16).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수는 8만 2,544개소로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전년대비 49.6% 증가한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7.9% 감소하였다. 이렇듯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계속 감소추세이나 다른 노인 복지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앞장에서 설명한 AIP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1> 2016~2020년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425	404	390	382	352
	양로시설	265	252	238	232	209
	노인공동생활가정	128	119	117	115	107
	노인복지주택	32	33	35	35	36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5,163	5,242	5,287	5,529	5,725
	노인요양시설	3,136	3,261	3,390	3,595	3,8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7	1,981	1,897	1,934	1,881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계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노인복지관	350	364	385	391	398
	경로당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노인교실	1,393	1,356	1,342	1,285	1,291
재가노인복지시설 ¹⁾	소계	3,168	3,216	3,494	4,821	7,212
	방문요양서비스	1,009	1,001	1,051	1,513	2,656
	주야간보호서비스	1,086	1,174	1,312	1,816	2,321
	단기보호서비스	95	80	73	78	73
	방문목욕서비스	588	609	650	942	1,596
	방문간호서비스 ²⁾	-	10	21	60	95
	복지용구지원서비스 ³⁾	-	-	-	0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90	342	387	412	385
노인보호전문기관		29	32	33	34	3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⁴⁾		136	153	160	184	196
학대피해노인쉼터 ⁵⁾		-	-	18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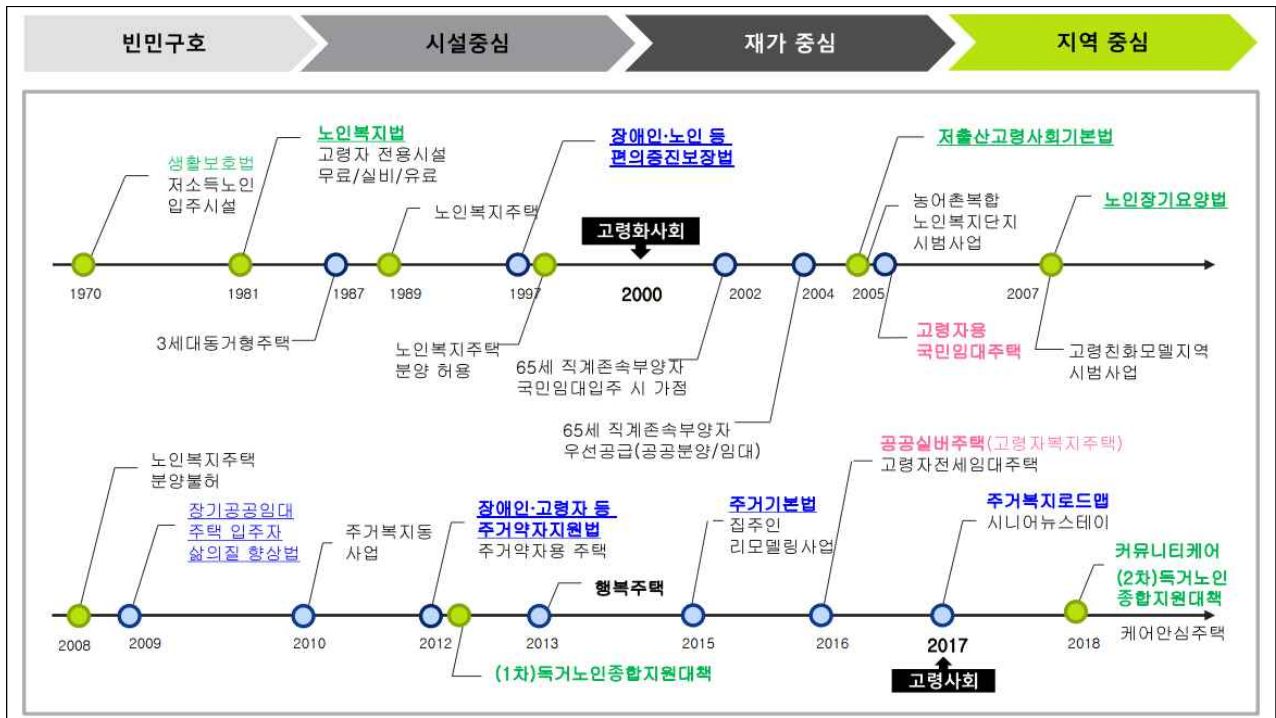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재구성

통상적으로 2000년대부터 주거 공급을 통한 주거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노인 주거복지정책은 애초에는 시설을 통한 거처 기능의 제공 중심이었으나, 점차 고령화 및 노인을 포함한 가족을 중심으로 다각화된 주거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과천도시공사가 주최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소이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수록된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 국내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전개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15쪽

이렇듯 노인주거정책은 개별 사업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아니라,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도 전개되어왔다.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 (2003년)에서 배리어 프리 주택이 처음 언급되었으며,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2013년)에서는 Aging in Place 실현이 주요 목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주거정책 관련 구체적 전략을 내세운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을 목표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내 안전관리 및 돌봄기능 강화, 맞춤형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홀

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연금형 매입임대,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등을 도입하였다. 가장 최근의 주거지원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을 계승하면서 고령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현행 5만 호(2018년~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 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 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 확대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2〉 주요 주거정책 관련 계획의 노인 주거지원 내용

계획	지원내용	
제1차 장기('03~'12) 주택종합계획('03)	고령사회,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 주택관리인, 건강보호인이 상주하고 노인가구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 · 노인이 거주하거나 노인용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 정책 추진 · 복지, 의료시설과 노인용 주거시설 연계 강화 ·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주거지원방식 도입
제2차 장기('13~'22) 주택종합계획('13)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및 개량 확대 ·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주택 도입 및 확대 추진(서포티브 하우징) · Aging in Place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17.11)	고령가구 주거지원	·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 (건설임대) 3만 호: 무장애 설계 적용, 이 중 0.4만 호는 고령자복지주택 - (매입임차) 노후주택 리모델링 재건축/전세임대 주택 총 2만 호 공급 · 홀몸 어르신 보호: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희망자), 주기적 안부전화 등 생활지원 실시 · 연금형 매입임대: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 수정계획('18.06)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마련	· 주거 내 안전관리 및 돌봄기능 강화 - 맞춤형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계획	지원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2.0 (20.03.20)	고령 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 고령자 복지주택 1만 호 공급 (종전 22년까지 4천 호→ 25년까지 1만 호) ·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활용 고령자 주택 7만 호(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 (매입임대): 맞춤형 특화설계리모델링 추진 · 기존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 집수리 사업 : 중위소득 45% 이하 고령자 대상 (주거급여)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
사회연구소, 60쪽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2차
에 걸친 ‘독거노인 종합계획’ 에서도 노인 주거 계획은 주거정책 계획을 포괄
하는 형태로 수립되었다. 고령자 관련 정책이나 계획 수립 시 주거는 이제 간과
할 수 없는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래는 주요 계획들과 노인 주거복
지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노인 관련 주요 계획의 노인 주거지원 내용

계획	지원내용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07)	안전한 노인주거 공간 확보	· 고령자 가구 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1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 제정 - 고령자가구의 최소주거공간규모(안) 및 고령자 가구의 최소안전기준(안) 규정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단계적으로 확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2012.05)	주거 관련 내용 없음	

계획	지원내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1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안전기준 설정 ·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 ·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제2차 독거노인종합 지원대책 (2018.04)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 등 정주여건 개선	· 공공 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 강화 ·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터' 설치 ·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급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61쪽

제2절 노인복지시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부부터 현재까지 거쳐 기능을 제공하는 노인시설의 종류는 크게 7차례 변화되었다. 제정 당시 노인복지시설은 특별한 구분 없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 시 노인여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거처를 제공하는 시설로, 양로시설 등 8개 시설로 규정되었다. 1993년 개정 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등 6개로 구분되었으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별도 조항으로 두었다. 1997년 전부 개정 시에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였고 거처 제공 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한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3종류로 나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2종류로 구분된다(주보혜 외, 2020: 62-63).

아래에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규정 및 입소자 규정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4-4〉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규정

시설구분		시설 규정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 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65쪽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규정

구분		입소자 규정	동거인 규정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 시설 및 노인공 동생활 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무료 입소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실비 입소대상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 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 입소 가능
		-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 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입소 가능
	노인복 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 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입소 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입소 가능

구분		입소자 규정	동거인 규정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1~2등급 및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양로시설 보호 불가인 경우)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양로시설 보호 불가인 경우)	·입소 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 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입소 가능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67쪽

또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시설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의료복지시설은 늘어난 반면, 주거복지시설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의 시설입소가 보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종 류	시 설	2020		2019		2018		2017		2016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82,544	297,167	79,382	266,325	77,395	231,857	76,371	219,476	75,708	212,601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352	20,497	382	21,674	390	19,897	404	19,652	425	19,993
	양로시설	209	11,619	232	13,036	238	12,510	252	12,562	265	13,283
	노인공동생활가정	107	953	115	954	117	998	119	1,092	128	1,062
	노인복지주택	36	7,925	35	7,684	35	6,389	33	5,998	32	5,648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5,725	203,075	5,529	190,820	5,287	177,318	5,242	170,926	5,163	167,899
	노인요양시설	3,844	186,289	3,595	174,015	3,390	160,594	3,261	153,785	3,136	150,0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81	16,786	1,934	16,805	1,897	16,724	1,981	17,141	2,027	17,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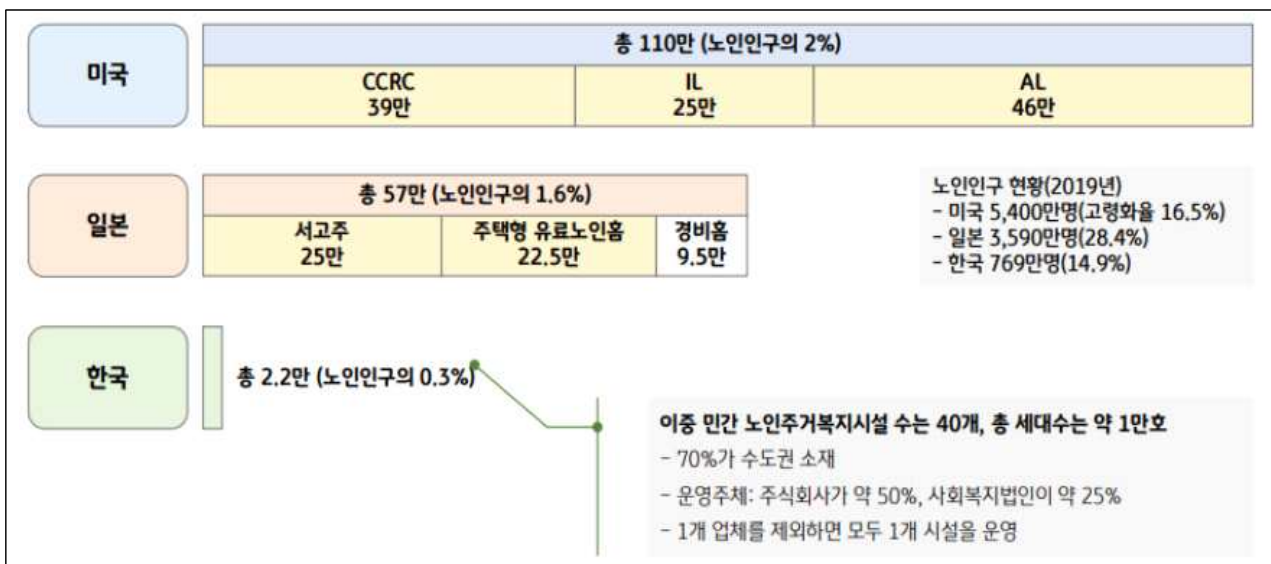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21. 6. 9.). 2021 노인복지시설현황

이처럼 노인에게 거처의 기능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능 저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비교적 본인부담이 높은 노인복지주택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빈곤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있어야 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은 여전히 유력한 거처의 선택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러한 노인이 앞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주보혜 외, 2020: 62-63).

또한 국내 민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40개, 총 세대수는 약 1만 호에 불과하다. 민간사업자 참여부진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용정원을 비교하면 한국 2.2만 명, 일본 57만 명, 미국 110만 명 수준이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정원의 비율을 한국 0.3% 수준으로 미국 2.0%, 일본 1.6%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중 약 70% 수도권 소재, 운영주체는 주식회사가 50%, 사회복지법인이 약 25%를 나타내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림 4-2> 한국과 미국,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정원 비교(2019)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시도시공사, 71쪽

제3절 공공임대주택

3.1. 노인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표 4-7>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유형	정의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67쪽

노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 유형별로 상세한 입주 자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나 별도의 업무처리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입주 대상은 노인 당사자와 노인 부양 가구로 구분된다. 입주 자격은, 노인 당사자는 연령(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경제상태(소득 및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인 부양가구는 노인 부양기간이 입주 자격에 포함된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과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별도로 입주 자격이 규정되고 있다(주보혜 외, 2020: 70).

〈표 4-8〉 공공임대주택별 노인 입주 자격

유형	입주자격	관련 법규
영구임대	- 노인 당사자 · (1순위)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노인 부양자 · (1순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제14조 시행규칙 [별표 3]
	- 노인 당사자(고령자복지주택 및 주거복지동) · 고령자복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단지 증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별도 입주자격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14조
국민임대	- 노인 부양 가구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 4]
행복주택	- 노인 당사자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 공급 ·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요건19)을 충족한 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전세주택	- 노인 부양 가구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분양전환주택	- 노인 부양 가구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일정한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 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6]

유형	입주자격		관련 법규
매입임대주택	일반	- 노인 당사자 ·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제20조 및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14조
	고령자매입임대	- 노인 당사자 (1순위) · 수급자 · 장애인이면서 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자 등 (2순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장애인이면서 소득 10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등	
	공동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 - 중증 노인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전세임대주택	- 노인 당사자 ·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제21조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70-71쪽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시,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100분의 8, 그 외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100분의 5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의미한다.

3.2. 노인거주를 위한 주택 지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인거주 지원형태는 고령자서비스주택이다. 고령자서비스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택이다. 즉 일반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시설 사이 중간적 성격의 주택으로 서비스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거주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AIP 실현을 위한 주거 대안으로서 고령자서비스주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거와 복지가 결합한 고령자서비스주택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이 있다.

공공주택은 노인가구만 단독으로 공급되기보다는 장애인,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대상가구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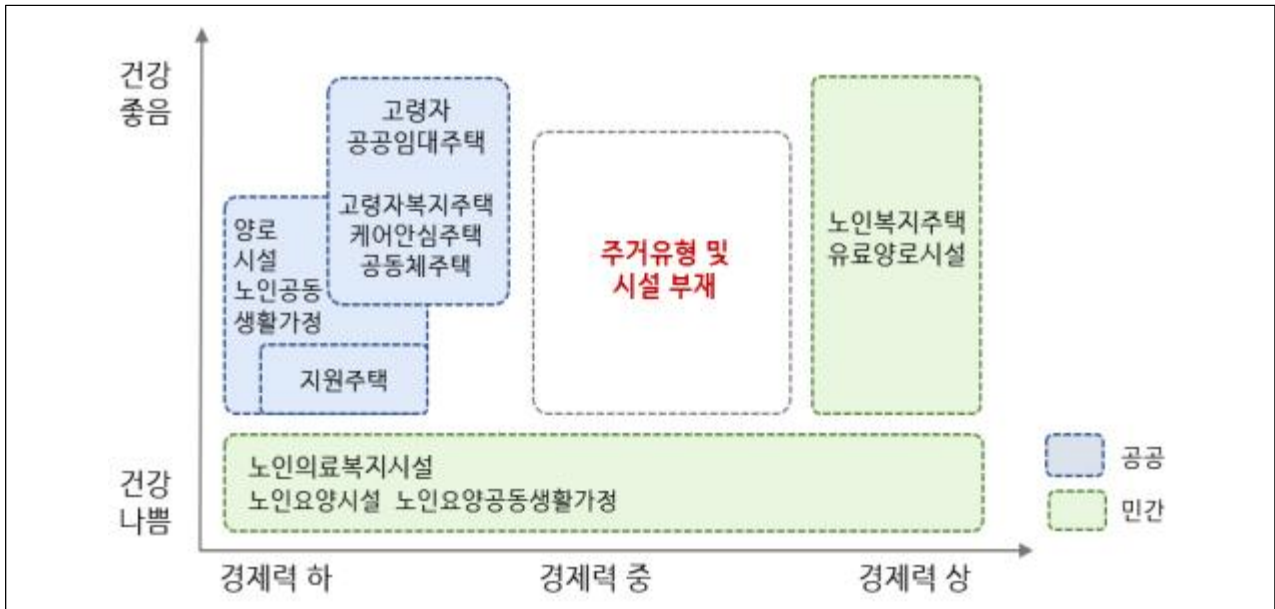
〈표 4-9〉 국내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구분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공급주체	국토부, 지자체(LH)	보건복지부, 지자체(LH)	서울시, SH 민간협력/민간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입주대상	65세이상이상하면서 도 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노인, 국 가유공자, 장애인, 생계 급여 수급자 등 우선권	요양·돌봄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시설 보호를 받고 있으나 케 어를 통해 지역사회속 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등이 주요 대상	공공임대형: 만65세 이 상 기초생활수급자 독 거노인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 누구나 가능	사회경제약자(서울시 조 례상 정의)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100%(2인)
개념	주거와 돌봄 지원 가 능, 안전손잡이, 높이조 절 세면대 등 무장애 특화시설 갖춘 주택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 로 지역사회 내 주거·의 료·요양·돌봄 등을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모델	독립된 공동체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과 규 약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주택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 상으로 주거관련 사회 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 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주요 운영현황	2021. 6월 기준 2,140호 2020~2025까지 총 1만 호 공급계획	16개 지자체 선도사업 1차: 노인대상 모델 5 개, 장애인 2개, 정신질 환자 1개 2차: 노인대상 모델 8개	2021년 서울시 노인 공 동체주택 135호 운영 (공공임대형)	2016. 6월 기준 72사업 지 803호 공급, 국토부 2022까지 2000호 이상 공급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73쪽

AIP를 위한 고령자서비스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대상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및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 대상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유형개발 및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촉진을 유도하여 가장 수요자가 많으나 노인주거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산층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출지원, 규제 완화 및 사회 인프라 지원 등 제도와 법을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3〉 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92쪽

또한, 사회주택의 운영주체로서 제1섹터(공공부문)와 제2섹터(민간부문)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제3섹터)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이끄는 민간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사례로 사회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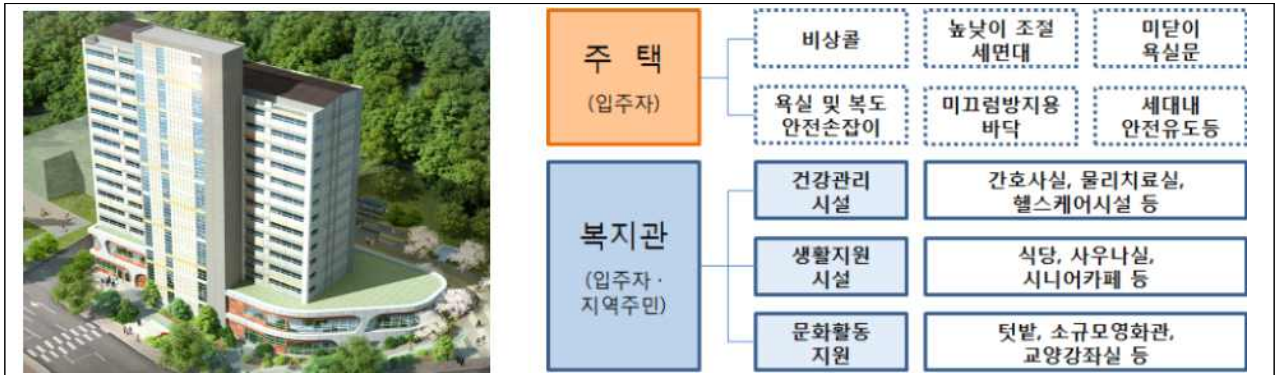
다만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지자체와 자치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2.1.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공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²⁾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2020: 7).

2)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과 명칭을 동일하나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림 4-4〉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2020. 4. 1.).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쪽

고령자복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즉 별도의 고령자복지주택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영구임대주택 중 입주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나 일정 호수 이상을 고령자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자체 등이 희망 시 국민·행복주택과 동시 공급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1천~2천㎡ 규모로 설치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 활동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2020: 7).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0년 4월 현재, 33곳 총 4,243호가 공급되었고(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2020: 7), 2022년 상반기까지 1,864호를 공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2021: 3).

〈표 4-10〉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순위
1순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이 밖에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증축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2010년 장기임대주택법 제정 당시 시작되었는데 주택단지 내의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주거복지동을 건립하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로 건설되고 입주자 선정은 장애인 고령자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다.

〈표 4-11〉 주거복지동 입주자격

공급형	입주자격	비고
장애인 고령자형(우선공급)	만 16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일반형	장애인 고령자 세대 또는 일반세대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쟁발생시 장애인·고령자 세대에게 우선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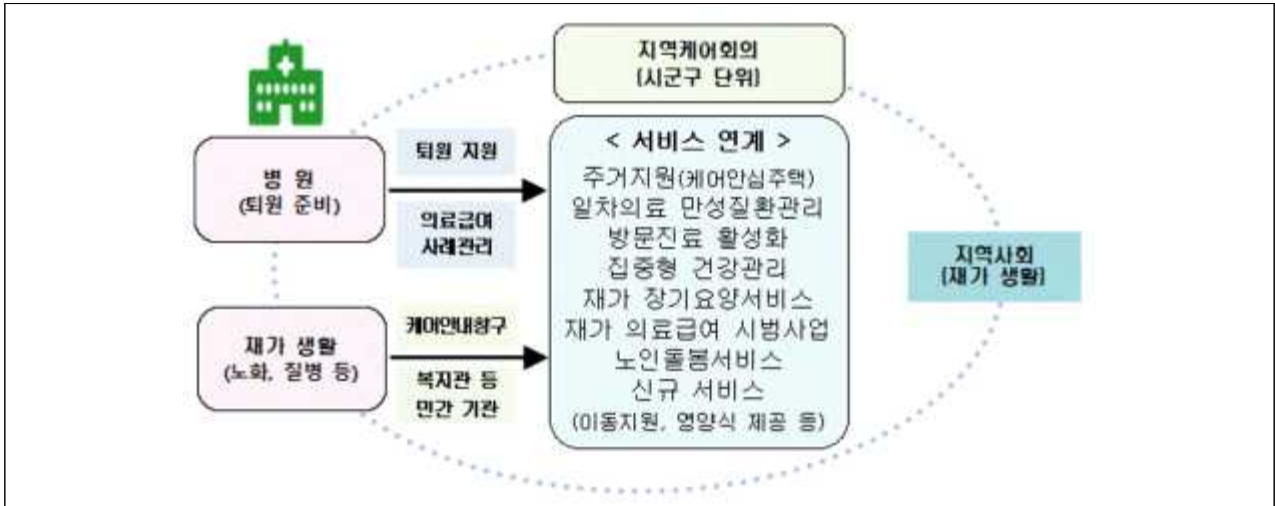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75쪽

3.2.2. 케어안심주택

케어안심주택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주거·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모델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주거 지원 전략과 관련된 보건과 복지 연계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대상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이 평소 생활하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이다.

〈그림 4-5〉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79쪽

케어안심주택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LH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케어안심주택으로 활동한다.

입주 대상은 입원치료 후 살던 집으로 복귀하기 위한 요양 돌봄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시설 보호를 받고 있으나 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등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해서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등 대상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말까지 확보된 주택은 총 105호이며, 441호를 추가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기존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고령화·슬럼화·지역공동체 붕괴에 대한 주거와 복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시한 광주광역시 광산형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가 있다.

‘늘 행복 프로젝트’ 케어안심주택은 문턱제거, 화장실 공간 확대, 세면대 높낮이 조절 등 무장애 설계 적용 및 저층부에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이 구성되어있다.

〈그림 4-6〉 늘 행복 프로젝트 주요내용

주요과제	주요내용	협업기관
늘행복 돌봄센터	• 마을형 커뮤니티 케어센터 운영 - 지역사회 사회 통합돌봄 구축(노인,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마을 공동체 조성 ✓경력단절 여성, 근로능력있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복지관, 돌봄조합
늘행복 일터	• 공익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고용의 기회 제공 - 주민참여 공동일터(공동작업장, 협동조합, 단지내 일자리) - 사회돌봄 일자리(돌봄 코디네이터, 공동식당운영) 창출 ✓현금서비스 대신 현물서비스(관리비 차감, 마을복지화폐 등)	(주)주택관리공단, 사회적협동조합
늘행복 하우스	• 인지건강디자인 도입 및 공간의 재배치 - 세대 특성에 맞는 구조화(세대통합주택, 케어안심주택) • 국토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시범사업 연계 - 주거사례관리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LH공사, (주)주택관리공단
늘행복 주치의	• 의료복지통합지원시스템(1차 의료강화) - 마을주치의(복약관리 등),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교실 • 아픈마음 치유센터 운영 - 정신건강·중독영역, 은둔형, 독거중장년 집중상담케어	의료협동조합
늘행복 공동체	• 1인가구 관계복지 형성을 위한 건강공동체 만들기 - 바깥활동을 통한 건강지수 높이기 - 광산 사회활동수당(공동체 활동 참여수당, 마을복지화폐) - 가족해체에 따른 마을장례(well-dying)	사회공헌 (CSR IMPACT)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81쪽

〈표 4-12〉 케어안심주택 ‘늘 행복 프로젝트’ 서비스지원체계

구분	지원내용
광산구청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성과분석 등 행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실상가 4호(주치의센터, 커뮤니티공간,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공실주거 케어안심주택 20호
(주)주택관리공단	찾아가는 마이홈 센터사업 운영(주거복지사 파견): 전단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주거분야 공동체 지원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83쪽

3.2.3.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은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을 설치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이 주택은 입주자 간 소통,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코하우징(co-housing) 형태를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협동조합 등 민간이 공급주체이며, 공공임대형, 자가소유형, 민관협력형, 민간임대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형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민관협력형은 주거취약계층, 자가소유형과 민간임대형은 모든 주민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4-13〉 노인 공동체주택 공급현황 (2021년)

구분	주택소재지	공급호수
공공임대형	금천구 보린주택	97
	동작구 홀몸어르신주택	27
	은평구 은빛주택	11
	신내의료안심주택	222
자가소유형	불광동 구름정원 사람들	8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서비스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84쪽

3.2.4.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부과,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주거관련 중소기업 등)가 공급주체이며 사업유형은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리츠형, 매입임대 운영위탁이 있다.

〈표 4-14〉 사회주택 사업유형

구분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사회적경제주체가 LH 미활용 용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시세의 85% 이하로 15년 임대완료 후 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토지임대부 리츠형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면 사회적경제주체가 이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시세의 85% 이하로 15년 임대 완료 후 사회적경제주체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매입임대 운영위탁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재임대

자료: 국토교통부. (2021). 2021 주택업무편람. 재구성

〈표 4-15〉 사회주택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자금조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매입자금 용자상품을 신설하고, HUG 보증상품을 개선하여 민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지원 <금융지원 심사기준> •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 임대기간: 15년 이상 공급 • 임대료: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의 5%p 기준 • 규모: 30세대 이하 소규모 추진시 보증요건 완화 (기금융자) '사회임대주택' 기금 용자 조건을 신설, 특히 사회주택의 보편적 유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출금리를 2.0%로 지원 * 최장 30년 이용 가능, 8년 이상 임대시 8년 이후부터 연0.1%p 금리인하(1% 범위내) (PE보증) HUG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조건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인하 * 총사업비의 7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 적용 *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 조건(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조직 등 지원	개별 사회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용자 및 토지임대 등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 금융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HUG에 설치

자료: 국토교통부. (2021). 2021 주택업무편람. 재구성

제4절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란 주거공간의 용도별로 공간 기능유지를 넘어 고령자의 생활행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 성능을 향상하는 접근방식이며, 고령자의 생활행위 수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주택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도 ‘넘어짐/미끄러짐’과 같은 노인의 추락 및 낙상사고의 72.1%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낙상사고 이후에도 79%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한 적이 없는 현 상황이며, 이와 같은 노인 낙상사고로 인한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비용 등 직접비용은 약 1.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고령가구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주택개조·개량에 대한 요구(21.8%)는 주택 구입자금(24.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택개조 요구는 다음 표와 같이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으나 비용부담,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부족, 세입자의 개조 후 원상복구에 대한 염려, 지금은 괜찮다는 막연한 생각 등으로 그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표 4-16> 노인특성에 따른 주택개조 요구

노인 특성	예방차원의 주택개조		사후 대응 차원의 주택개조	
	신체기능 저하 대비	인지기능 저하 대비	장기요양급여노인	요양/재활병원 입원환자 중 퇴원 예정환자
주택 개조 요구	안전사고 발생 전 불편함을 없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정든 집에 살고 싶다	치매가 생기기 전, 치매초기에 치매 발생을 지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싶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복지용구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맞는 주택개조제품을 구매해서 변경하고 싶다	변화된 내 신체상태에 맞춰 주택을 개조해서 퇴원 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 도시공사, 41쪽.

이번 절에서는 주택환경 개선지원과 관련하여 주거수선유지급여 등 주택개조비용 지원과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기준을 살펴본다.

4.1.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와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택을 수선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 사업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라 할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존 5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유사 주택개량사업을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하여, 효과적인 주택 및 실질적 주거보장을 강화하였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로 2014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방식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욕구별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국토교통부, 2020: 4). 이에 2015년 7월부터 수급자의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가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표 4-17> 주거급여 개편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14)	개편 후('20)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약 70만 가구	118.9만 가구('20.12월)
지원기준	(현금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의 22.032% * 현금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79.968%)+주거급여액(22.03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지원
소요예산	7,285억 원	19,879억 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약 9만 원	15.3만 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1년 주택업무편람, 225쪽

2021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822,524원이다.

<표 4-18>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자료: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 (2020)

수급권자는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수급권자와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임차가구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한다.

<표 4-19> 2021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자료: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 (2020)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보수범위를 구분하는 주택노후도는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한하여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한다.

〈표 4-20〉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 차등지원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기타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자료: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 (2020)

자가가구 대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본인부담 경감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4-21〉 수선유지급여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 대상자

구분	정의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가진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70쪽

이 밖에 주거약자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이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2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소득기준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임대인 동의 기준	미래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개조주택 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자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45호. (2020)

4.2.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기준

2005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이 발표한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능력과 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노인주거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 기준(21개)과 자립성을 고려한 유도기준(17개)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권장기준)되었다.

<표 4-23>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기초기준(21개)	유도기준(17개)
단차(턱) 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화재경보기, 목욕용 의자, 욕조 및 세면대 주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문 잠금장치, 문손잡이, 인터폰, 침대, 입식용 소파, 양변기 설치, 샤워기 걸이, 세면대 설치, 욕실 문 확장 등

자료: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2005. 12. 26.).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주택 기준 만들어졌다 - 12월 23일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확정.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을 공고하였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1호). 다만, 이 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수준이다.

<표 4-24>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2011년)

구분	고령자 (자립생활가능)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 휠체어사용 고령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공통 사항	-거실, 침실, 욕실에 비상연락장치 설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5cm 이상(욕실은 80cm 이상) 확보하고, 여닫이 문은 90도 이상 열리도록 함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있는 경우 1.5cm 이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로 마감			
	-여닫이 문 앞뒤 여유 공간(120cm×120cm)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 미세기문, 접이문 등으로 교체	-여닫이 문 앞뒤 여유공간(150cm×150cm)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 미세기문, 접이문 등으로 교체 -출입문 옆에 60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여닫이 문 앞뒤 여유 공간(120cm×120cm)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 미세기문, 접이문등으로 교체	

구분	고령자 (자립생활가능)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 휠체어사용 고령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현관	-야간센서등 설치			
	-75~85cm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 -현관 마루굽 틀은 3cm 이하			
		-마루굽 틀에 경사로 설치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 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2m 내외로 조정)	-	- 비디오폰 설치 - 조명 밝기 (600~900lx) - 세대 내 시각경 보기 설치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2m 내외로 조정)	-	-
침실				- 조명 밝기 (300~400lx)
욕실	-욕실 출입구에 야간센서등 설치			
	-욕조 설치 시 욕실 바닥에서 45cm 이하로 계획 -샤워공간 설치 시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공간 주위에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출입문 방향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또는 미세기문으로 설치		-	-
	-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2011. 5. 27.).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 <별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실별 안전기준

현재 가장 규정력 있고 포괄적이며 강제력이 있는 기준은 주거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애초 같은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만 규정되었으나, 2019년 개정 시에 안전기준이 추가되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주거약자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의 안전기준에서는 출입문 손잡이와 현관, 거실, 부엌, 침실을 규정하고 있다.

〈표 4-25〉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구분	내용
출입문 손잡이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
현관	-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 -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를 설치
거실	-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혹은 휠체어 사용자로 신청이 있는 경우) -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900룩스(lux)(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엌	- 좌식 싱크대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두 조건 모두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혹은 휠체어 사용자로 신청이 있는 경우)
침실	- 조명 밝기가 300~400룩스(lux)(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4545호, (2020)

또한 해당 대상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표 4-26〉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1. 주출입구/접근로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설치, 그 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2. 현관/출입문	출입문 유효폭(85cm)확보, 문 옆 공간(60cm)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 설치, 휠체어 보관공간(1.5*1.5)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3. 거실/복도	이동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확보, 비디오폰 설치, 비상연락장치, 조명(600~900룩스, 청각), 시각경보기 설치, 단차제거
4. 부엌	좌식싱크대, 취사용밸브, 화전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낮춤 시공, 낮음형 주방가구
5. 욕실	센서등, 욕실물 유효폭(80cm)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기, 좌변기 공간(75cm)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확보, 바닥낭방
6. 바닥/발코니	미끄럼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그 밖의 단차제거
7. 문	레버형 손잡이, 문하부 파손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8. 스위치/콘센트	배선기구 각종 높이 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 도시공사, 45쪽

제5절 주거지원서비스의 연계 현황

현재 공공 영역의 주거복지전달체계에서는 AIP를 목표로 고령자 거주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직접적 주거지원서비스,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여러 주거지원서비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적 전달체계 구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 대신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주거복지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5.1. AIP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5.1.1.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서비스

가. 주거복지로드맵 2.0

국토교통부가 인구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을 위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중 고령자 대상 계획을 보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 호(2018년~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 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그림 4-7> 주거복지로드맵2.0 노인주거지원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3. 19.).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2.0시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지원과 금융지원으로 나뉘어 있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중 주택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인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2022년까지 4천 호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 호로 늘리고, 기존 지자체,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유공자·위안부·한부모가족·북한주민·장애인 등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또한 기존 주택을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무장애설계, 안심센서 설치, 욕상 텃밭 가꾸기 같은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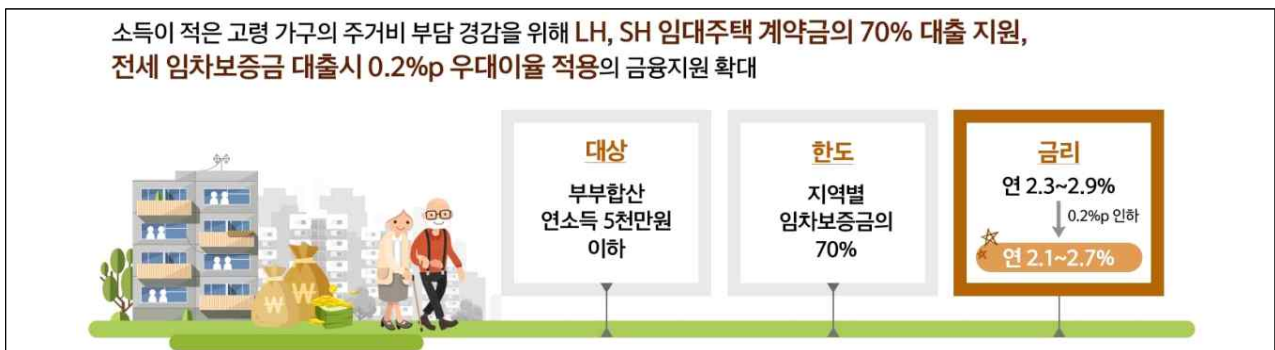
<그림 4-8> 노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주택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3. 19.),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2.0시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는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시 0.2%p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림 4-9> 노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금융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3. 19.),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2.0시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는 관련법상 1~5등급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림 4-10> 복지용구 구입품목(10개)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 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 전 사고 예방 및 지립환경 조성을 위 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 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
도시공사, 46쪽

<그림 4-11> 복지용구 대여품목(6개)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목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목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목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시공사, 46쪽

<그림 4-1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2개)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횟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시공사,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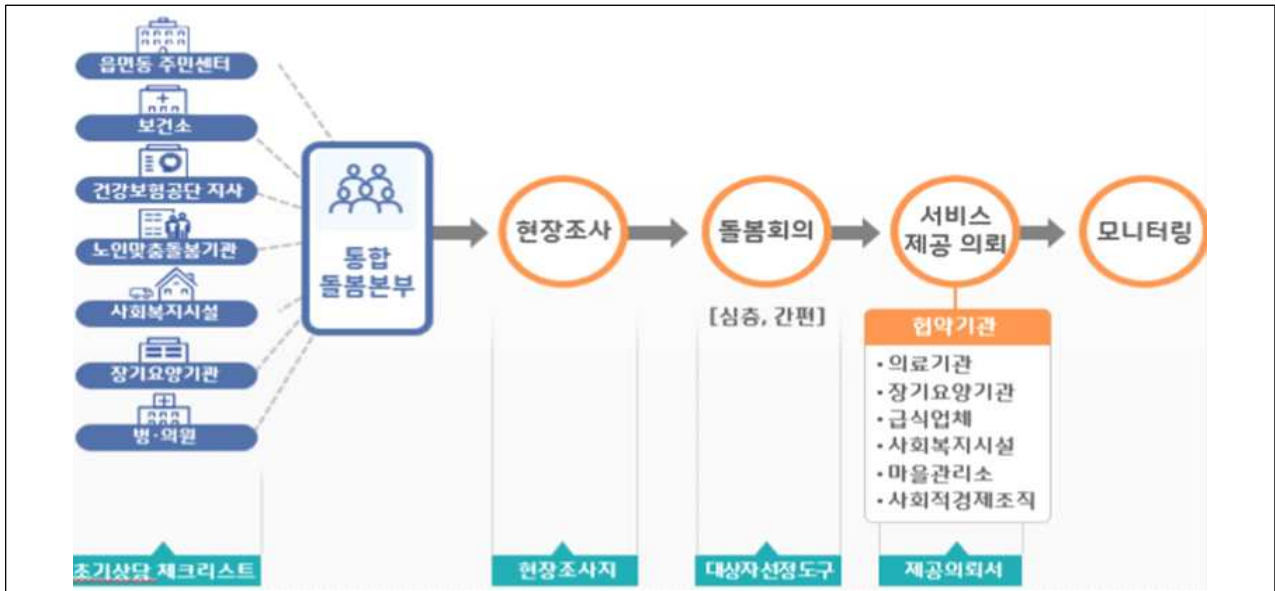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통합돌봄본부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지난 1월 화성과 춘천에 3곳과 2곳이 각각 설치되었다.

통합돌봄본부는 각 시청과 보건소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합동 근무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며 그 대상은 소득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기준 노인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 주택개조를 통해 거동불편정도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거유형기준 자가 가구,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4-13>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업무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1. 4. 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림 4-14>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1. 4. 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1.2. 서울 및 경기도의 주거지원서비스

가. 노후주택 수리 서비스

서울시는 기존 철거와 신축 위주의 주거정책을 고쳐서 오래 쓰는 문화로 바꾸고자 노후주택 중 특히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위주로 집수리를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0월 6개소의 ‘집수리지원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찾아가는 주택진단서비스, 집수리 관련 각종 공구 임대, 집수리업체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를 실시했다(신동은, 2015; 서울특별시, 2020a). 서울시는 집수리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집수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보혜 외, 2020: 90).

서울시는 2008년 서울시 복지재단이 시행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주거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추진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16). 사업방식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집수리를 하는 ‘공공주도형’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집수리를 실시하는 ‘민간참여형’으로 구분된다(서수정, 변나향, 박석환, 김경미, 이동운, 2018: 42). 2012년에는 낙후지역 주택단열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었고, 2018년부터는 민간참여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민간참여형 사업은 폐지되었다.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 등 기타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은 필요에 따라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서수정 외, 2018: 43).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시에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수요를 조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 가구를 신청 받는다. 시에서는 후원물자와 인력을 확보하여 배분하고, 각 시행기관을 통해 시공이 이루어진다.(주보혜 외, 2020: 91).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선정하여 개별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원 대상

이 되면 외부공사(지붕, 외벽, 담장, 단열, 방수, 창호 등)와 내부공사(도배, 장판, 실내창호 등)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공 건축가 등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 상태를 진단하고 시공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장영호, 2019.).

은평구의 ‘무엇이든 홈케어’ 또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사업 주체인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의 집수리 전문가들이 모인 협동적 조직체이다.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무엇이든 홈케어’는 주택관리 종합서비스로서 월 8,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면 주택 잔손 보기(전등 교체, 누수 등)부터 안전점검까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동 주민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택 잔손 보기 서비스 사업’ 협약을 통해 이 서비스를 사업 대상 지역의 거동 불편 노인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무료로 제공하였다(주보혜 외, 2020: 92).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시행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난방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시공,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81호를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은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부터 450호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다(경기주택도시공사, 2020).

‘G하우징’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부엌, 화장실, 거실, 지붕 등 주택 내·외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경기주거복지포털, 2020). 민간 건설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07년 첫 사업이 시작되어 2019년까지 누적 지원 가구가 499호가 되었다. 이 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민간건설사가 직접 사업대상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경기도청 공정경제과, 2019. 1. 8.).

덧붙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2021년 12월 현재 총 14개 자치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글로벌네트워크(GNAFCC)³⁾에 가입하고 고

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도시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국제보건기구(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 되어야 할 주요 영역과 점검 항목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에 기초한 실행계획 수립이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에게 요구되는 주요 과업이며, 현재 각국의 회원 도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정보교류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표 4-27〉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2021. 12월)

지역	자치단체(가입연도)	지역	자치단체(가입연도)
서울	서울특별시(2013)	제주	제주도(2017)
	도봉구(2018)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2019)
	양천구(2018)	경기	수원시(2016)
	강북구(2018)		부천시(2018)
	노원구(2019)		성남시(2020)
	서초구(2019)		의왕시(2021)
	종로구(2020)	충청남도	논산시(2018)
	성동구(2020)		공주시(2021)
	금천구(2021)	경상북도	칠곡군(2020)
	용산구(2021)	경상남도	남해군(2019)
부산	부산광역시(2016)		통영시(2020)
인천	동구(2021)		창원시(2020)
	미추홀구(2021)	전라북도	정읍시(2014)
울산	울산광역시(2020)	전라남도	나주시(2019)
광주	동구(2017)		화순군(2020)
	서구(2019)	강원도	고성군(2021)
	광주광역시(2020)		

자료: 고령친화도시 글로벌네트워크(GNAFCC). 일반자료.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blic-of-korea(2021.12.27.) 인출. 제작성.

3)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이다.

고령친화도시에서 ‘주거’ 분야는 핵심적 영역 중 하나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도 노인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택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주택을 위한 안전설비, 집수리, 주택개조 등의 서비스 제공, 주거문제 관련 상담서비스, 노인 전용 공동주택의 확대운영,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김춘남, 박영란, 고영호, 최성은, 2019:14).

나. 집수리상담서비스: 서울시

2016년 4월 출범한 서울시의 ‘집수리 닥터단’은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건축사,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총 109명으로 이루어진 닥터단은 25개의 자치구별로 3~5명이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택을 방문하여 공사범위와 비용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김수현, 2016. 3. 8.).

‘집수리전문관’은 주택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2019년부터 서울시 소재 주택 중 10년이 지난 (사용승인일 기준) 저층주택(4층 이하)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집수리닷컴, 2020).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와 시공기술자 등으로 이루어진 집수리전문관은 소규모 주택개량부터 신축 및 증축,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까지 현장에서 시공 범위와 방법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특별시, 2020a).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집수리전문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수리전문관을 추가로 파견하여 지원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19. 7. 24.).

다. 온라인 포털: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는 정보제공과 온라인 상담을 위한 포털사이트 또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구축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주거종합포털(housing.seoul.go.kr)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설경진, 2019). 해당 사이트는 수요자들이 다양한 주거복지 혜택과 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지

원내용에 대한 자가진단을 가능하게 하였고,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이외에 그동안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던 LH와 SH의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이 시스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의 ‘집수리닷컴’ (<http://jibsuri.seoul.go.kr>)은 집수리 지원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진단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수리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카데미 과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공사를 위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는 집수리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도 안내한다(최윤정, 2016. 4. 24.).

한편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온라인 플랫폼 ‘경기주거복지포털’은 주거복지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주거복지 담당자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거복지 수요자들에게 온라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내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2018년부터 주거복지포털 ‘경기홈(ggghome.gico.or.kr)’을 운영하여 지역별 임대주택 정보와 활용 가능한 주거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5.2. 중간지원조직(주거복지센터)

주거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사업의 종류가 늘어나고, 이용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주거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서비스 제공 초기 단계부터 종료까지 진행과정을 체계화한 사례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5.2.1.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거복지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담 체계로서 역할 하고 있다.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은 기존 복지전달체계가 통합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거 관련 문제를 중

심으로 한 정보제공과 상담,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대두되었다(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의 시작은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진으로 서울, 전주, 대구에 6개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민간 재정지원으로 출범한 주거복지센터는 2012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김선미, 2017: 3).

2015년 기존 주택법을 개정한 주거기본법이 도입된 것은 주거복지센터가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거기본법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주거복지센터가 정부 정책으로 전국적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남원석, 김수경, 백세나, 2016: 1; 이종권 외, 2015: 27-28). 또한, 주거기본법 시행 이후 서울시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주거복지센터의 외연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선미, 2017: 4).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수요자 접근성 제고 및 자원연계, 온·오프라인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 주거복지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는 서울시주거기본조례를 기반으로 모든 자치구에 센터가 설립되었지만, 경기도는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아직 양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조사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4개 지역에 불과하며, 여주시와 과천시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과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성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7곳을 제외한 24개 지역이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과천시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표 4-28〉 서울·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현황(2021. 12월)

지역	센터명	운영주체 (모법인)	운영방식 위탁/직영	관련 조례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 자치구)	- 서울주택도시공사(9개: 강동, 도봉, 동대문, 서초, 성동, 양천, 용산, 중구, 중랑) - 민간법인(16개: 강북: (사)강북주거복지센터 관악: (사)관악주민연대 금천: (사)한국주거복지협회 노원: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서대문: (사)희망마을 성북, 종로: (사)나눔과미래 송파: (사)위례 은평: (사)마을과 사람 영등포, 강서, 마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동작: (사)주거복지연대 강남: (사)해냄복지회 광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구로: (사)구로시민센터		
경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도시공사	위탁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민간	시흥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영	수원시 주거복지조례
	부천시주거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	위탁	부천시 주거복지지원조례
	고양시주거복지센터	고양시	직영	고양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자료: SH서울주택도시공사(2020) 및 경기도주거복지센터(2021) 내부자료 재구성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활동범위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주거기본법 제22조 1항),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관련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이 있다(남원석 외, 2016: 65). 이외에 각 센터별로 속한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부가사업과 특화사업이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5.3.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전문인력 양성과 주거복지 관련 자격의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주거기본법 제24조, 시행령 제16조).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업무는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영구임대단지 등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현재 활동 중인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주거서비스코디네이터를 들 수 있다. 이외에 지자체의 주도로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전문 교육·훈련 과정과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전직 건축가나 기술자를 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5.3.1.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주거복지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공인번호 2016-2호)으로 운영되며, 자격은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중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과정(필수 5과목, 선택이수 5과목 이상) 이수 후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 시 자격을 취득한다.

5.3.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1987년 이후 제도화되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전문자격으로(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0),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전문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문화형성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

령 제69조에 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응시자격은 부여되지 않으며, 총 2차례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차 과목에는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 2차 과목에는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가 포함된다.

〈표 4-29〉 주거복지사와 주택관리사 비교

구분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자격 구분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 지역 주거복지실태 조사 및 분석 -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 상태 점검 - 주거생활 상담, 거주 고충상담 -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 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아파트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동소유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 공동주택 문화 형성
자격관리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실무 종사 시 응시가능 -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시 자격 부여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1,2차 시험 합격(전과목 평균60점 이상)

자료: 주보혜 외.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6쪽

5.3.3.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취약계층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되, 지자체와 SH 공사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도 SH공사의 경우, 임대아파트 및 매입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야기되는 입주민의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투입할 계획을 밝혔으며(조성신, 2020. 2. 10.), 경기도 시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정보 제공 및 생활안정 서

비스 지원을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경희, 2019. 7. 9.).

5.3.4. 민간 인력

민간 인력 확보와 관련한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9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은 노인 주거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이연숙 교수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한 주거관리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주거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고령자 적합 맞춤형 개조에 대한 이론교육(140시간)과 현장실습 및 실제 개조작업(160시간)으로 이루어진다(민지선, 2017).

성북구는 2019년 교육을 수료한 청년 16명으로 ‘청년 취창업 두드림 사업단’을 꾸려 관내 52개의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400여 건의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공된 서비스 범위는 문턱 제거와 조명교체, 안전손잡이 설치와 미끄럼 방지 시공(욕실), 난간 설치(거실, 침실), 수전 교체, 싱크대 높이 조정(주방) 등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에서부터 청소, 정리, 방역까지 다양하다(박종일, 2020. 2. 17.).

다만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 목표를 노인 주거복지와 연계함으로써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이 변화된 현재에는 노인주거복지 사업이 미미하다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제6절 소결

국내 노인 주거지원 흐름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강조하던 것에서 노인용 주택공급까지 다양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노인 대상 주거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관련 계획이나 주거 관련 종합계획에서도 노인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 공급은 노인 부양을 강조하는 제도에서 노인에게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는 물론 민간에 의한 노인용특화단지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만을 위한 밀집된 주거 제공이 관리나 케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낙인 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세대 분리로 인한 공동체성 저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령자서비스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으로 현금흐름이 부족한 우리나라 노인세대를 위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과 같은 자산 유동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길어진 시대수명으로 인해 이용료 마련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하여 세제지원, 바우처 제도 운영 등과 같은 이용자 부담완화 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 처럼 노인주거와 서비스를 분리하여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활용하고, 더불어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이 더욱 논의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과천시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현황

제5장 과천시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현황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지속, 기대수명 연장, 베이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인한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의 인구피크는 2033년 1,346만 명으로 전망되며 2022년 고령사회, 202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기비전2040』, 2015.)

과천시 역시 3기 신도시,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완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 증가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장에서는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과천시의 자치법규와 관련 주요 계획, 복지서비스를 살펴보고 과천시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과천시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다.

제1절 노인복지 관련 자치법규

1.1.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제15조를 통하여 시장의 고령자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15조(생활환경)

시장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에는 고령자의 여가와 문화 활동 장려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등 노인의 사회활동 장려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16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2.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과 독거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의 노인 * 6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3만 원 * 소급 없음
장수축하금	만 80세 이상의 노인 * 6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1일 6만 원 * 연간 최대 27일
독거노인간병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50만 원 * 생애 1회 지급

1.3.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따라 일할 의용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추진계획에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 공동작업장 확대, 생산품의 우선 구매,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4.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과천시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

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노인복지 관련 주요 사업계획

과천시가 진행 또는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과천시 시정설계 2021’, ‘2022년 과천시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17년 수립된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과천의 새로운 모습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과천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2개 분야 6개 사업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2021년 3월 수립된 ‘과천시 시정설계 2021’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등 본격적인 도시개발과 고령사회에 진입한 과천시의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기존의 시정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2022년 과천시 주요업무계획’은 앞의 두 계획과 같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물을 과천시 시정을 담당하는 각 실·과에서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총 12개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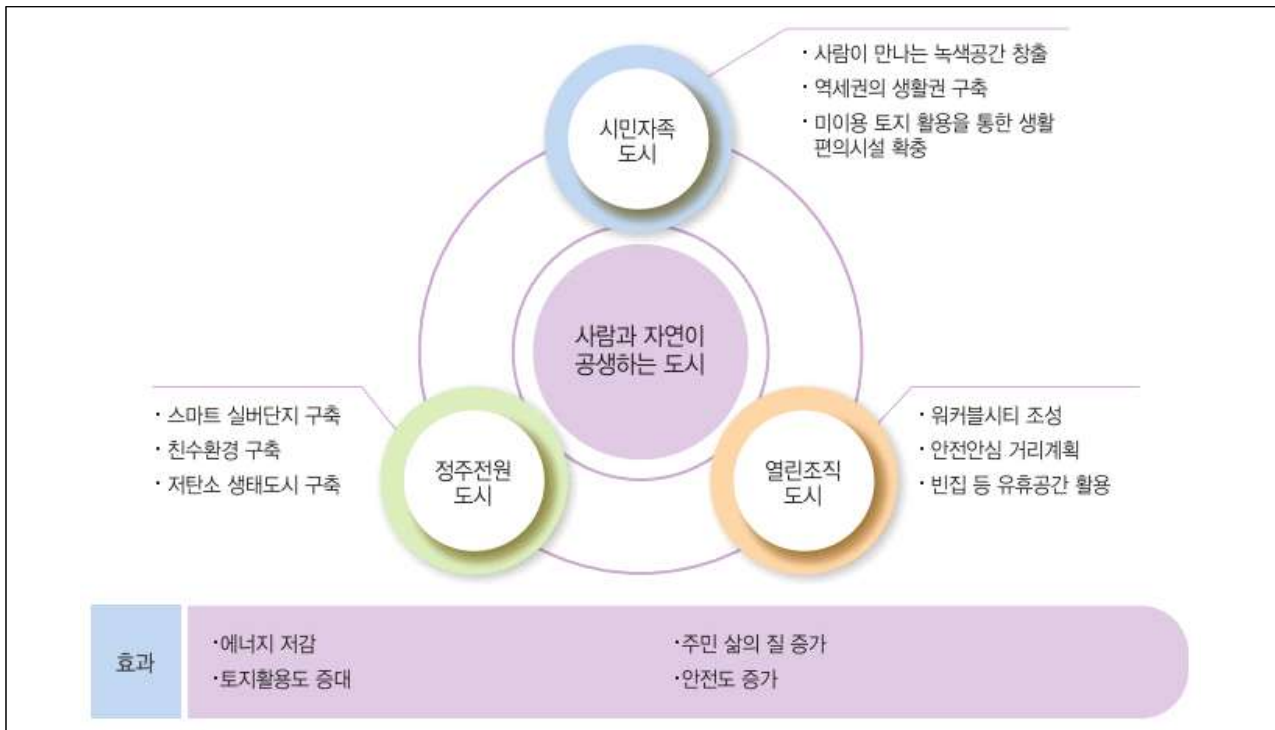
2.1.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2017. 3. 27.)’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도시공간구조재편과 보건복지안전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에서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조성하는 주거 및 복지시설로,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공공주택은 고급 의료단지와 실버주택을 결합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시설이 고령자거주지 밀집지역에 대응하며, 국제적인 의료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5-1〉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과천비전2040 성장계획(2017), 178쪽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2〉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시민자족도시	사람이 만나는 녹색공간 창출	· 시민제안형 도시계획 인정제 사업 · 주민협력형 도시환경관리 시범사업 · 모듈러 건축을 활용한 지역산업 거점 구축
	역세권의 생활권 구축	· 역세권 생활편의 인프라 조성 · 역세권의 입체교차 및 환승시스템 구축(중점반영)
	미이용 토지 활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 데이서비스 주민생활편의시설 구축 · 2030 청년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정주전원도시	스마트 실버단지 구축	• 헬스케어 스마트 실버주택단지 조성 • 요양형 건강센터 조성
	친수환경 구축	• 수변경관 친환경 정비사업 • 양재천변 카페거리 조성
	저탄소 생태도시 구축	• 주거형 수직 온실농장 조성 • 친환경 생태도시 시범사업 단지 조성 • 지속가능한 저탄소 재생건축 종합화훼센터 조성
열린조직도시	워커블 씨티 조성	• 안심보행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
	안전안심 거리계획	• 안심귀가를 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 안전생활을 위한 방재 거점 구축 사업
	빈집 등 유휴공간 활용	• 구도심의 유휴공간 활용사업

자료: 과천시전2040성장계획(2017), 180쪽

도시공간구조재편 부문에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한 세부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헬스케어 스마트 실버주택단지 조성

2050년 국내 노인 인구의 비율이 38%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결과와 같이 고령층의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주거환경 및 서비스 제공 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노인주거시설의 유형이 기존 열악한 환경의 요양원에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실버타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과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기술을 통해 주거 노인의 건강, 심리, 특징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삶 제공과 도시의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고령자 집중 거주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목적으로 헬스케어 스마트 실버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1년 ~ 2030년이며, 첨단기술이 집약된 헬스케어 실버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헬스케어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주택단지는 간호, 건강관리, IT기술, 식사 및 가사 지원 서비스와 거주노인 및 일반인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한다.

녹지 공간 확충과 편의증진을 위한 적정벤치 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고령자 친화형 공원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② 요양형 건강센터 조성

과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의료 수준이 낮고 요양시설 기피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요양시설의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휴양과 치료가 가능한 요양형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였다.

사업기간은 2021년 ~ 2040년으로, 노인 집중지역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 조사, 요양형 건강센터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시설 내 녹지 공간 조성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요양형 건강센터 조성으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도심지 내 자가에 거주하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및 편리성 증대를 꾀하였다.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보건복지안전 부문에서는 미래 의학기술과 보건환경이 비약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현재 약 82세인 기대수명이 사실상의 ‘100세 시대’로 변화되면서 삶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정년 및 연금 수령시기 연장, 평생교육 활성화, 은퇴 후 인생 2모작 등 현재 정형화된 생애과정인 ‘교육-근로-은퇴’ 사이클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수명증가라는 양적 측면보다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보건의료 수요 증가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고, 고령화 수준이 심화할수록 각종 연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보건복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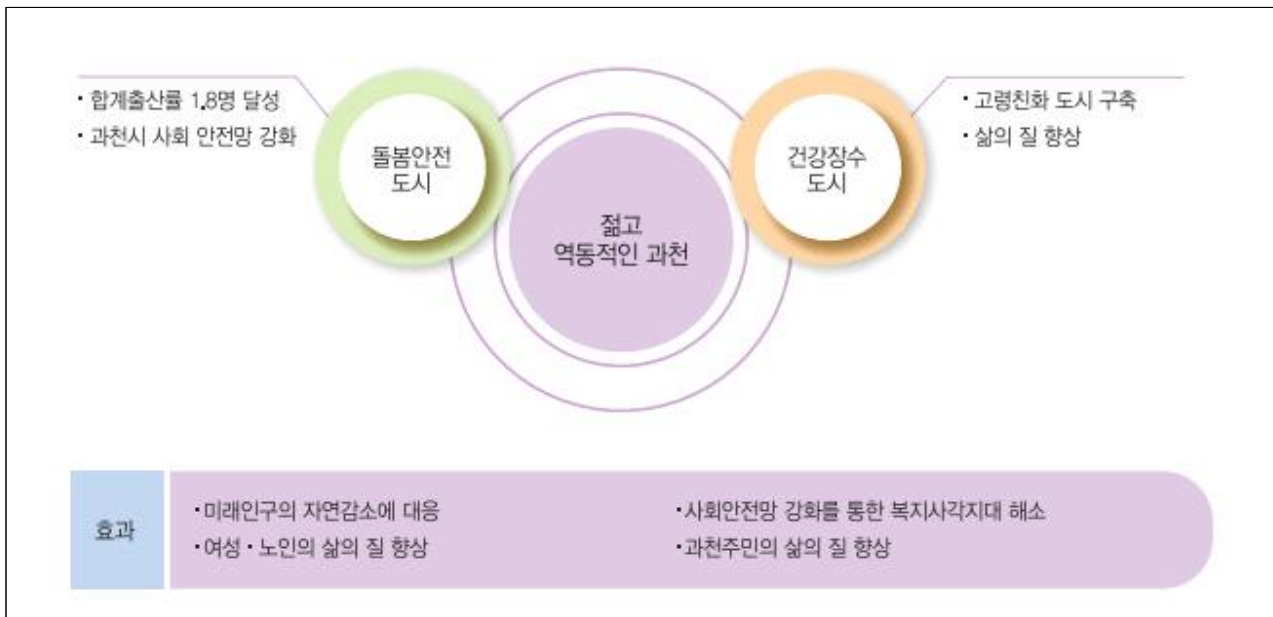
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재정 추계를 해도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2014년 10.2%에서 2030년 17.9%, 2040년 22.6%, 2050년 26.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5-1> 과천시 고령화 추이 (2017년 ~ 2021년 10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고령자인구(명)	7,474	7,762	8,084	8,994	9,947
고령자비율(%)	12.9	13.3	13.8	14.2	14.2

자료: 과천시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구성

<그림 5-3> 보건복지안전 부문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2017), 214쪽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보건복지안전 부문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의 기대수명을 가진 과천시의 장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적인 노화(activeageing)를 통한 건강수명 증진과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떠오를 장수리스크(longevityrisk) 및 노후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보건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건강자수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건강관리와 예방의 지역사회 보건체계구축, 의-직-주(醫-職-住)복합타운 및 건강주택건설, 지식정보타운 내 건강산업과 연계, 응급의료체계 수립, 노인친화무장애(barrier-free)도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5-4〉 보건복지안전 부문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돌봄안전도시	합계출산율 1.8명 달성	• 출산친화 도시만들기(중점반영)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가족정책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건강장수도시	고령친화도시 구축	•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고 • 무장애 원스톱서비스 지원 • 융복합형 노인웰니스센터 조성
	삶의 질 향상	• 과천시 의료기반 확충 • 과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료: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2017), 215쪽

보건복지안전 부문에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한 세부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고

인구 고령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 증가와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자살, 노인파산, 독거노인 등 노인 문제 해결을 통한 과천시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행정요구에 따라 2018년 ~ 203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노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강통합관리센터를 보건소 부설로 설치하고, 치매예방센터기능을 강화해 치매검진뿐만 아니라 인지재활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사후관리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연장’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이 겪는 고독과 무위를 달래줄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응급 의료체계와 경로당, 노인복지관 기능 다각화 등을 통해 신규 택지조성지역에 거점 노인센터를 연계하는 보건과 복지 분야 통합서비스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무장애 원스톱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 2018년 ~ 2025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

발하고 보급하여 장애물이나 장애구간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체계 개선하고, 이동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인 근린환경, 교통환경, 주거환경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one-stop 서비스체계 수립하여 저상버스도입 및 이용확대, 이동 동선 개량, 계단, 문턱,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은 생활거주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③ 융복합형 노인웰니스센터 조성

과천시에는 관내 노년계층 대상 시설이 과천시노인복지관 1개소에 불과한 한계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 203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다기능 융복합시설 조성을 계획하였다.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한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노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인웰니스센터를 지식정보타운, 과천도심, 뉴스테이 지역(현 3기 신도시)에 계획하고 실버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여 생애 주기프로그램과 연계하였다.

또한 실버스펀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스포츠, 문화, 놀이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개발하고, 취약 노년계층의 참여율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바우처제도를 노년계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④ 과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과천시의 전반적 행복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자살률(10만 명당 50명대)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천시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례화’와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조기검진 시행’을 통하여 적극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하여 과천시 노인자살률 낮출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 과천시 시정설계 2021

과천시는 2021년 시정을 설계함에 있어 8개 분야에 대한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천시가 제시한 역점시책 중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립요양원과 행복드림센터 건립, 효행장려금 및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을 세부 과제로 추진하였다. 다음에서 과천시 2021년 시정 역점시책과 세부 과제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그림 5-5> 과천시 2021년 시정 역점시책



자료: 과천시 시정설계 2021, 12-13쪽

① 시립요양원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과천시 중앙동 62-14
- 규 모: 지상5층
- 대지면적: 3,306㎡, 건축면적 : 1,191.93㎡(연면적 4,937.10㎡)
- 수용인원: 140명(일반 116, 치매전담실 24)
- 사업비: 231억 원
- 추진일정
 - 건축설계 공모: 2021. 상반기
 -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실시설계: 2021. 하반기
 - 착공: 2022. 4월
 - 위탁운영체 선정 및 시설 운영 준비: 2022. 상반기

<그림 5-6> 시립요양원 조감도



자료: 과천시 시정설계 2021 (2021), 68쪽

② 행복드림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과천시 문원동 92, 92-2, 92-3(1,688㎡, 시유지)
- 연면적: 4,600㎡(지하2층, 지상3층)
- 사업비: 138억 원 추정
- 추진일정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2021. 2월 ~ 3월
 -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건축설계 공모 : 2021. 하반기
 - 착공: 2022. 상반기
 - 위탁운영체 선정 및 시설운영 준비: 2023. 하반기

<그림 5-7> 행복드림센터 건립 조감도



자료: 과천시 시정설계 2021 (2021.), 70쪽

③ 효행장려금 및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세대주 지급)

○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지원금액 및 방법

○ 효행장려금:

- 월5만원(지역화폐 지급) / 277세대 (총사업비: 13,850천원)

○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월5만원(지역화폐 지급) / 309명, (총사업비: 15,450천원)

○ 신청방법 및 장소: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2022년 과천시 주요업무계획(안)

① 과천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목적

다양한 주거 유형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와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점 착안사항

관내 주거 취약계층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설치시기: 2022년 상반기

○ 장 소: 청사 내 공간 확보 (45㎡)

○ 운영방안: 시 직영 또는 과천도시공사 위탁

○ 센터역할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임대주택 연계 등)
- 주거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 관련기관 및 연계 지원
-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주거복지 특화사업

②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확대 지원

□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각종 민원신청 대행, 장보기, 차량 이동 서비스 등을 통해 이동 및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여 노인의 고립감과 고독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중점 착안사항

- 거동 불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및 교통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지원을 통해 외부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기존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의 이용대상자를 확대 지원
-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 증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관내 거주 노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 이용 현행 유지
 - 일반 노인 가구는 교통비(실비) 부담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과천시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지원 내용: 어르신 이동권 확보 및 병원대행 서비스 등 외부활동 지원
 -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등 외부활동 지원
 - 휠체어 및 거동 불편자의 경우 사회복지무요원을 보조담당으로 지원
- 지원 절차
 - 서비스 신청(전화, 내방) → 서비스 예약 확인·조정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이용자관리 모니터링
- 운영 기관: 과천시노인복지관
- 소요 예산: 97백만 원

③ 어르신 ‘냉장고를 부탁해’

□ 사업목적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냉장고와 주방의 주거환경 개선과 청결한 식재료 보관, 정리수납 방법 교육 및 정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건강관리로 노인의 안정된 생활 영위

□ 중점 착안사항

- 취약계층 및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중 건강상태로 인해 냉장고 관리가 소홀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냉장고 정리·정돈 서비스를 진행하여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과 질병예방
- 2021년 페이지 카페 미운영 인력으로 4개월간 시범사업 운영
⇒ 제10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우수프로그램 선정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독거 어르신 등 신체적 불편으로 식품위생/냉장고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 지원 내용
 - 전담인력 3명이 서비스제공 (필요시 영양사, 사례관리 담당자 동행)
 - 냉장고 청소 후 정리정돈 방법 안내, 식품관리에 대한 방법 안내
 - 주방기구 및 싱크대 청소 병행, 영양관리 교육
- 지원 절차
 - 대상자조사 및 시청(전화) → 방문상담(건강 및 주거상황 확인) → 서비스 예약 → 서비스제공 → 이용자관리 모니터링
- 운영 기관: 과천시노인복지관
- 소요 예산: 11,240천원

④ 과천시 행복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

□ 사업목적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는 개방형 시설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재 역할과 시민의 문화 복지생활을 증진시켜 열린 커뮤니티 형성

□ 중점 착안사항

-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도심의 이전에 따른 권역 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함
- LH는 부지를 제공하고 과천시는 생활 SOC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생활SOC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과천시 행복센터(가칭) 생활SOC복합화사업
- 사업위치: 공공임대주택(S10블록) 내 가로변
- 대상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생활SOC복합화시설(10종)]
 - 노인복지센터(자체사업)
- 연면적 : 2,092.43㎡(지상3층, 지하저수조)
- 사업기간 : 2020. 9월 ~ 2023. 8월
- 소요예산 : 47.6억 원

⑤ 시니어클럽 설립,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어르신들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사업위치: (가칭)과천행복드림센터내 2층
- 사업규모: 전용면적 220㎡
 - 사무실 80㎡, 상담실·교육실 50㎡, 작업장 90㎡
- 사업비: 약 516백만 원
- 사업기준

구분	시니어클럽	(2021.현재)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팀
시설	사무실 1실 이상, 작업장 1실 이상, (총 연면적 100㎡ 이상)	노인복지관 내 사무실 사용
인력	시설장 1명, 정규직 4명, 계약직@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기능	· 공익형 및 사회참여활동 노인일자리 운영 · 시장형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인일자리 상담·교육·훈련 등	· 공익형, 사회참여활동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	344백만 원 (도비 10%, 시비 90%)	97.3백만 원 (도비 30%, 시비 70%)

⑥ 문원 청계경로당 신축

☐ 사업목적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을 통해 지역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 복지 수요를 충족

☐ 사업개요

- 사업명: 청계경로당 신축(現 경로당 부지 내)
- 사업부지: 문원청계5길 47(면적 132㎡, 시유지)
- 사업기간: 2020. 3월 ~ 2022. 9월
- 사업량: 노유자시설 1개소 신축(지하 1층·지상 3층, 엘리베이터 포함)
- 소요예산: 1,420백만 원

⑦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사업목적

노인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시설현황: 구관(2,289.71㎡, 2001년 개관), 신관(3,107.91㎡, 2010년 개관)
- 운영방식: 위탁운영
- 위탁기간: 2018. 11. 18. ~ 2021. 11. 17.(3년)
- 이용인원: 일평균 약 900명
- 사업비: 6,760백만 원

☐ 세부추진계획

-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도비)
- 노인 행사 및 시 자체사업 위탁(시비)
 -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실버가족·노인일자리 주말농장,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 사회교육·상담사업
 - 노인 상담사업: 상담을 통해 노인의 심리·정서적 욕구 해결
 - 노인 성(性)인식 개선사업: 노년기 성(性)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 사회교육: 교양, 취미, 여가, 정보화 등 80여개 프로그램 운영

○ 재가복지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국비)
- 어르신 심부름센터: 병원, 관공서 등 이동서비스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비)

○ 복리후생 및 편의서비스 지원

- 경로식당, 이·미용 서비스, 목욕탕, 찜질방, 셔틀버스 운영 등
- 바둑·장기실, 노래방, 도서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장, 컴퓨터실

○ 외부공모사업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 추진

⑧ 노인일자리 지원

□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노인일자리 지원: 과천시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위탁운영
-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과천시 자체사업
- 사업비: 2,162백만 원

□ 세부추진계획

- (2021년) 실버인력뱅크 운영: 15개 사업 401명
 -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지원
 - 공익형 노인일자리(국비): 240명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국비): 123명
 - 시장형 노인일자리(국비): 38명
 - 노인자원봉사: 시니어멘토스쿨 등 11개 봉사단 운영
- 노인일자리 확대 (2021년) 401명 → (2022년) 420명
 - 공익활동형 발굴: 재활용품분리배출 도우미, 커피찌꺼기 재활용 도우미, 공유킥보드안전정리도우미, 지하철 무료 우산대여소 관리
 - 사회서비스형 발굴: 시니어 책 배달사업, 청소년 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교육시설 학습지원
 - 시장형: 과천스마트팜, 공공 이불빨래방, 반려동물음식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실버카페 3호점
-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추진

⑨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역량강화

☐ 사업목적

-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사회참여 등을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
-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운영 지원
- 관내 경로당 활성화 지원(경로당 29개소, 회원 1,963명)
- 소요예산: 1,309백만 원

☐ 세부추진계획

○ 경로당 운영 내실화

- 경로당 우렁각시 사업(시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비)
-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시비)
-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비)
-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도비+시비) : 경로당 1개소당 1개 프로그램 이상 확대
-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시비) : 전 경로당 혈압기기 신규 지원, 안마의자, 물품 구입, 시설보수, 안전점검 등
- 경로당 활성화 지원(시비) : 상해보험, 전담관리사 지원, 연찬회 등

○ 노인 역량강화 지원

-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운영지원(시비)
- 실버경연대회(기금) : 그라운드 골프, 한궁 2개 프로그램
- 경로의 달 행사(기금) : 경로당 별 자체 행사 지원
- 노인대학 활성화 사업(기금) : 강좌 프로그램 운영, 문화탐방 등
- 경로당 지원 사업(기금) : 그라운드골프교실 운영, 백세신문구독 등

⑩ 취약 어르신 눈높이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노인복지 향상

☐ 사업개요

- 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주거(생활)시설: 구세군양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구세군과천요양원, 구세군승리요양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 4개소
-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7개소
- 노인전용주거시설 운영: 노인의 집(2개소 1명)
- 사 업 비: 1,070백만 원

☐ 세부추진계획

- 구세군양로·요양시설 지원
 - 양로시설 운영비(국비) 및 요양시설 운영비(도비) 지원
 -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비) 지원
 - 입소노인구호 및 양로시설 종사자 가계지원비(시비) 지원 등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도비): 기초수급자 21명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운영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 3 ~ 5등급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4개소 48명
- 365 어르신돌봄센터 지원
 -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평일 저녁 및 주말 연장 운영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관내 기초수급자의 비용을 지원
- 노인의 집 운영(시비)
 - 시설 개·보수비용 및 임차(2개소) 비용 지원

⑪ 건강한 노후 및 안정적인 노인복지 지원

☐ 사업목적

-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장례문화 개선을 도모

☐ 사업개요

- 기초연금 등 노인수당 및 화장장려금 지급
- 사 업 비: 11,854백만 원

☐ 세부추진계획

- 노인생활안정: 11,768백만 원
 - 기초연금(국비): 매월 30~300천원 차등지원
 - * 65세 이상 / 약 3,066명 / 하위소득 70% 이하, 매월 25일 지급

- 기초생활보장급여(국비) : 주부식비 월 평균 256,267원 지원
 - * 양로·요양원 입소 기초수급자 / 81명 / 설날·추석·월동대책비 추가지급
- 월동난방비(도비) : 11~3월 월 50천원 지원
 - *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 215가구 / 매월 20일 지급
- 독거노인 간병비(시비) : 기초생계수급자 30명
 -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 30명 / 입원 4일째부터 일 최대 60천원 지원(1인당 연간 27일)
- 건강보험료 지원(도비): 월 10천원 미만
 - * 최저보험료 대상자 / 100가구 / 매월 25일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시비): 매월 50천원 지원(지역화폐)
- 장수수당(시비): 매월 30천원 지원
 - * 만80세 이상 / 약 2,000명 / 6개월 이상 과천 거주, 매월 20일 지급
- 효행장려금(시비): 매월 50천원 지원(지역화폐)
-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500천원(생애1회)
- 화장장려금 지급(시비): 86,000천원
 - 과천시 주민의 사망화장 시 유족에게 사망화장 장려금 지급
 - 과천시 관할구역 내의 분묘개장 화장 시 개장화장 장려금 지급
 - * 화장료의 50% 지원,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⑫ 경로당 주치의 사업

□ 사업목적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 교육, 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 배양과 2차 질환 예방, 건강한 삶 영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 중
- 사업대상: 65세 이상(28개 경로당)
- 사업내용: 노인질병 중심 주치의 건강상담 및 보건·영양교육 등

□ 세부추진계획

- 참여인력 : 10명(의사2, 간호사3, 영양사2, 운동처방사1, 공무원2)

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공무원
인 원	2명	3명		2명	1명	2명
업 무	건강상담 및 교육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치매선별 검사	소변염분측정 영양,식단관리	낙상예방 운동 연계	행정업무

-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및 치매 검사 후 상담
 - 지역사회 연계, 센터연계 또는 가정방문사업 대상자로 연계 운영
- 한방강좌와 혈압, 혈당 등 무료 건강측정
- 정기 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검진, 암 검진) 독려
- 중앙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력하여 노인복지 홍보

제3절 노인복지시설

과천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총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유형과 주요사업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5-2> 과천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단체	주요사업내용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29개소 경로당지원, 노인대학 운영

자료: 과천시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표 5-3> 과천시노인복지관

기관유형	주요사업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의원, 경로식당, 이미용실, 노인일자리, 도시락배달, 어르신상담, 재가복지사업 등

자료: 과천시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표 5-4> 구세군과천양로원

기관유형	입소자격
노인주거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자료: 과천시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표 5-5〉 장기요양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급여종류
노인의료 복지시설	구세군과천요양원	노인의료시설급여
	구세군승리요양원	노인의료시설급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Only 1" 큰소망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1)"과천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재가장기 요양기관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Only 1" 큰소망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과천노인돌봄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과천노인 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자료: 과천시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최근 노인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요양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조건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주거급여, 복지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주거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복지서비스 분야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과천시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1. 식사지원

과천시에는 과천시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노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5-6〉 과천시 노인대상 식사지원 서비스 현황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내용
경로식당 운영	과천시 노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무료 일반노인: 1인 1식 1000원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	과천시 노인복지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자료: 과천도시공사. (2021. 9월). 과천돋보기」 제2호, 재구성

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과천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및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지원서비스: 전화 및 방문 안전·안부 확인 지원
- ② 사회참여서비스: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 ③ 생활교육서비스: 건강 유지·악화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동 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 ⑤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4.3.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만 65세 이상 과천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량 이동지원, 의료시설 이용보조 및 약품구입 보조, 은행과 관공서 이용 지원, 외출 지원, 장보기 지원, 기타 심부름 등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신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4.4.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마지막으로 과천시노인복지관 신청을 통하여 실제 혼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은 독거 노인주거 내 화재센서, 가스 센서 등 장비 설치, 온라인 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소방서 연계 응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제6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앞선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 주거복지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재가중심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AIP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번 연구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과천시의 노인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과천시 노인주거와 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함께 살펴 노인주거복지에 관한 이론과 지역 특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구성을 하였다. 앞장까지의 내용이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정책 제언, 즉 노인주거복지의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

이 장은 과천도시공사가 노인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를 대표자들과 함께 9월 15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진행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와 12월 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주최한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특화도시(AIP)구축을 위한 방안」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 방향」 학술세미나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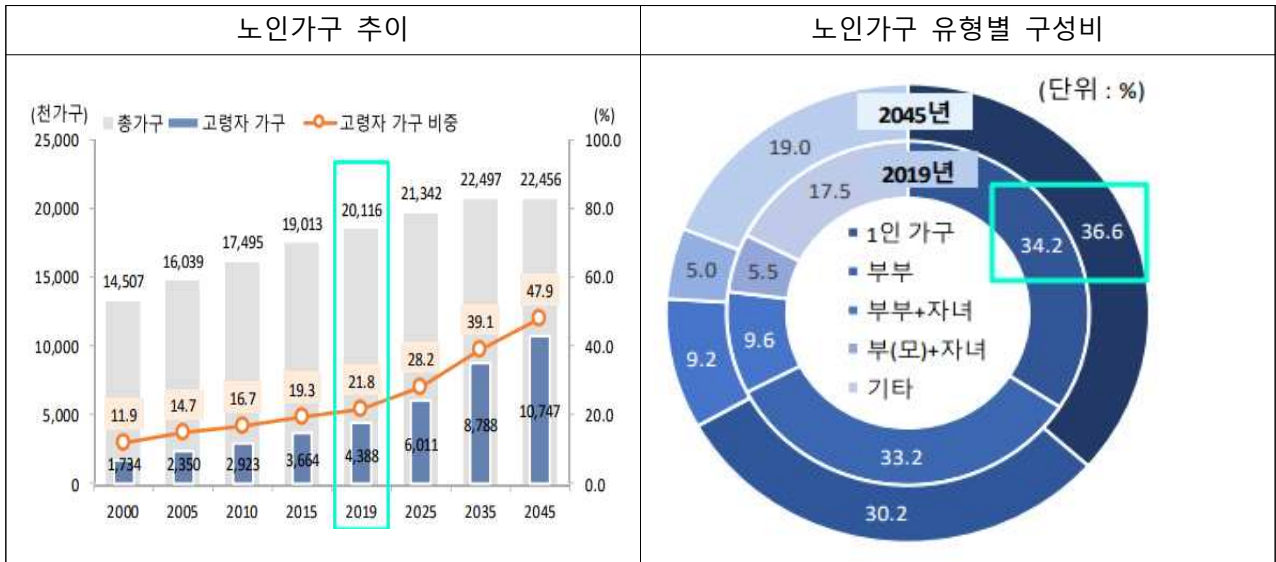
제1절 전문가 의견

1.1. 과천시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도시공사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소이 박사는 적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 고령자 대응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통계’를 인용하여 독거노인 혹은 부부 등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의 6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가구의 34.2%에 달하고 2045년에는 36.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6-1> 노인가구 추이 및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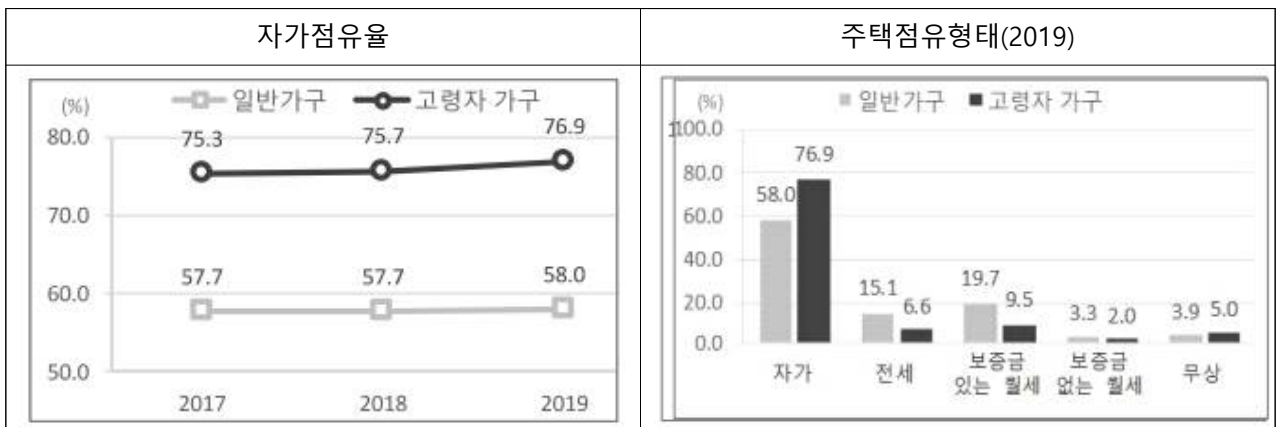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10쪽

일반적인 가구 구성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감소하고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노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54.6%, 자가율이 76.9%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자가율은 56.6%로 낮아진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자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특성은 서울에 초근접한 도시인 과천에서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통계수치임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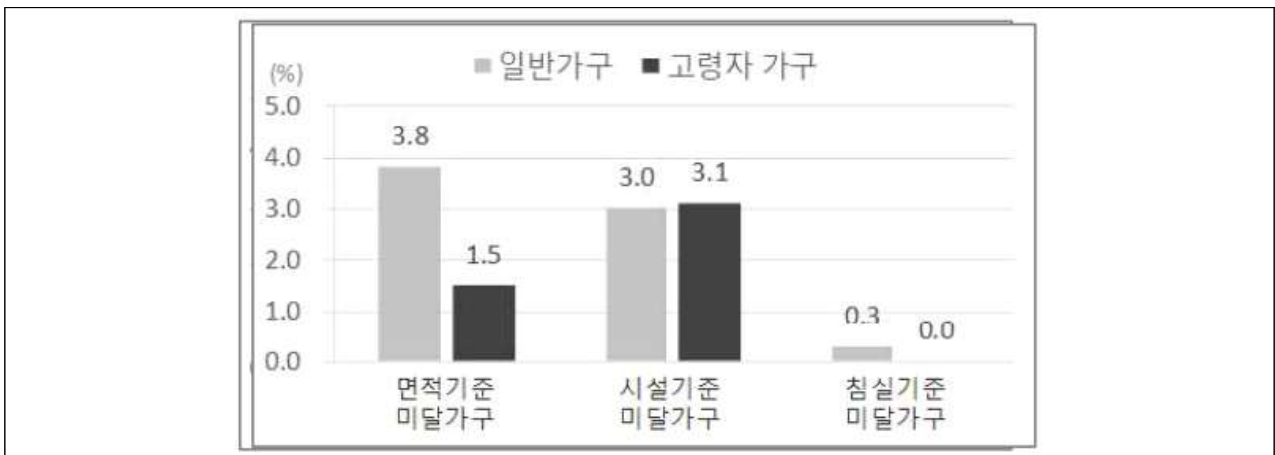
<그림 6-2> 노인가구 자가점유율 및 주택점유형태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11쪽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9%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9.4%로 전체가구의 5.3%와 전체 1인가구의 8.2%보다 그 문제가 심각함을 도출하였다.

<그림 6-3> 세부항목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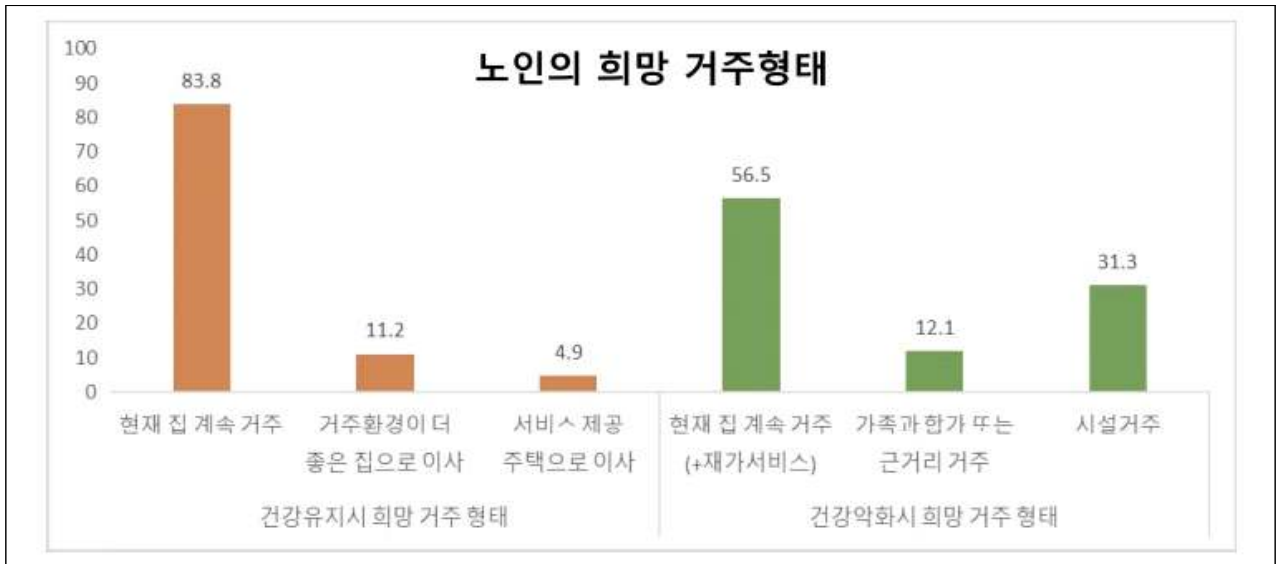
또한 노인가구는 전체가구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넓고, 평균 거주기간은 길고 주거이동률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2020 노인실태조사’를 인용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중 70.7%는 자녀와 비동거하고 있으며, 향후 자녀와 비동거 의향은 79.3%로 조사되었으며, 고령자와 자녀의 동거이유가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이 34.2%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고령자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래 거주희망은 자기 집을 83.8%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운동성 등 건강이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처럼 거주하던 주택이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노인주택 정책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노인가구의 현재 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4.8년으로 주거이동성이 낮아 주택 및 지역을 고령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불편’, ‘좁은 면적’, ‘주택출입불편’, ‘개보수비용 부담’ 순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림 6-4〉 노인의 희망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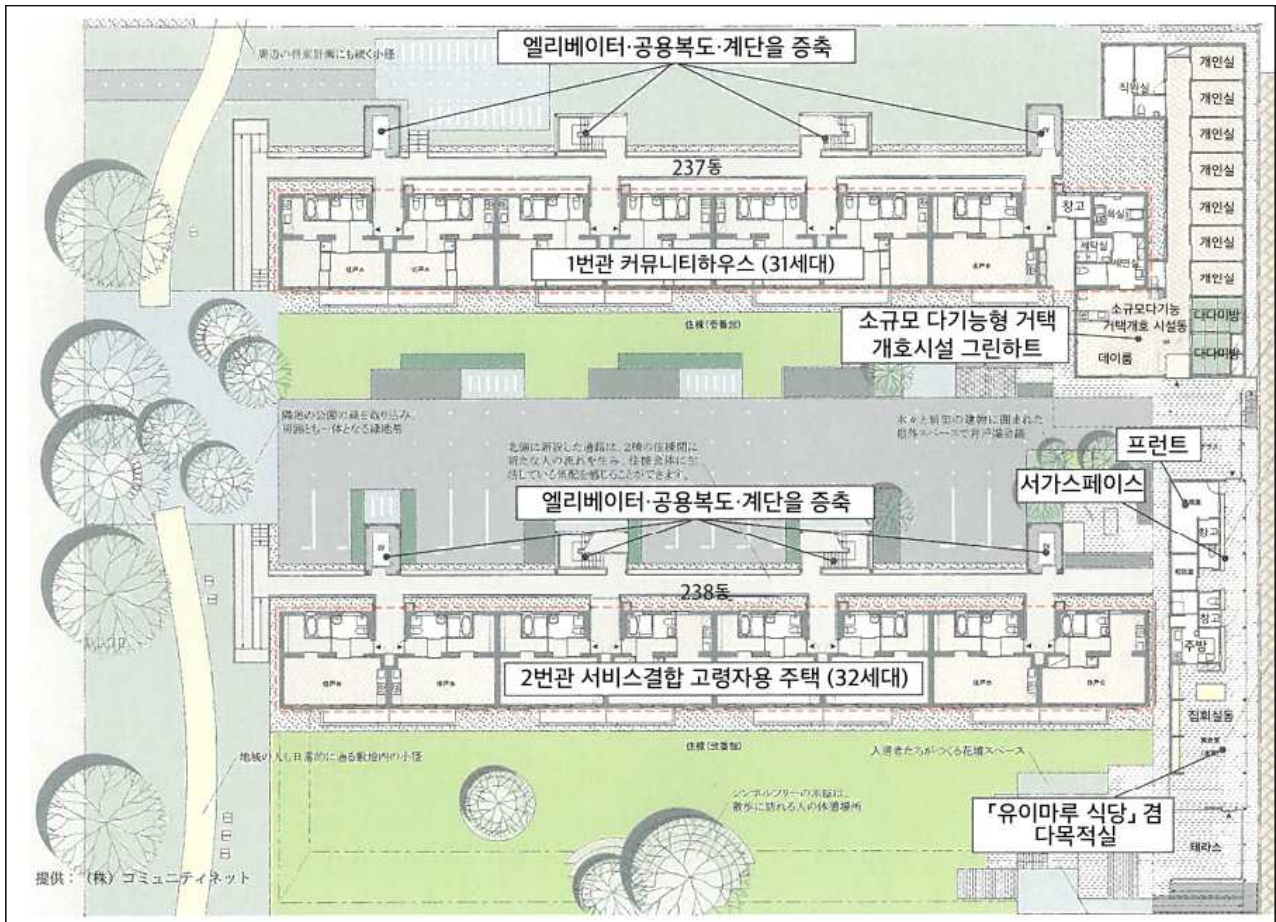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12쪽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환경에 관한 조사에서는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사고 발생장소 중 ‘가정’이 62.5%로 상업시설(8.4%), 의료서비스시설(6.8%), 도로(5.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고 대부분은 ‘넘어짐/미끄러짐’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노인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가 8.9%, ‘노인의 배려설비 없음’이 71.3%로 부정적인 인식이 80.2%로 나타나 향후 주택개조지원 및 고령자주택 건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공간 설계 적용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배려 설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천시의 고령자 현황 및 특징으로 전체 노인 중 19%인 독거노인 비율(그중 15.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적인 고령자 거주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거주형태(60세 이상 주택유형 41.2%), 국내 평균보다 낮은 자가율(60세 이상 점유형태 54.6%), 60세 이상 월평균 100만 원 미만 가구 소득비율 19.6% 등은 중산계층이 많은 과천시임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주거비지원 정책 등 앞으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고민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실행과제로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매입임대를 활용과 정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등을 통한 저소득, 1인 가구, 임차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친환경적이고 서울인접의 장점,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중간계층을 위한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용 주택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림 6-5> 고령자 주택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 평면도



자료: 박혜선, 은난순. (2020). 지역 공동체에서의 고령자 커뮤니티 공간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일본 고령자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Korea Science논문 제26권 2호, 54쪽.

또한, 주택개조 지원사업, 생활환경 정비, 주거비 지원 등 과천시 맞춤형 지역주도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도입사례로 서울시의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사업과 서울시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소개하였다.

서초구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

2019년 시행, 청년사업단 선정(특화교육 이수), 낙상예방 주택개조와 생활밀착형 간편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코로나19 예방 방역서비스 등 제공

서초구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

2019년 시행, 청년사업단 선정(특화교육 이수), 낙상예방 주택개조와 생활밀착형 간편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코로나19 예방 방역서비스 등 제공

1.2. 과천시 주택개조 사업을 위한 제언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이용민 교수는 일차적으로 실질적인 노인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 관련 데이터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 주거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최우선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림 6-6〉 2021년 충북 독거노인 주거 실태조사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 도시공사, 60쪽

그리고 노인 주택개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을 파악하고, 풀어야 할 지역사회 문제와 연계한 주택개조 해결방안 사례로 인천광역시의 공모사업, 서울 성북구의 청년 일자리 해결과 노인주거문제를 연결한 사례, 그리고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6-7> 부천시 선도사업 추진 비전 및 목표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 도시공사, 61쪽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주택개조를 전담할 수행기관의 필요성과 주택개조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생활진단사 양성교육 사례와 인천광역시의 마을주택관리소 활용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생활진단사 양성교육 계획(자체인력 양성)

- 교육목적
 - 주거생활진단사로의 전문성 향상
 - 노인과 노인상담에 대한 기본이해 증진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관련 자격취득자 및 관심 있는 주민
 - 교육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
 - 노인과 노인상담에 대한 이해
 - 노인과 주거환경
 - 주거생활진단의 실제
 - 현장실습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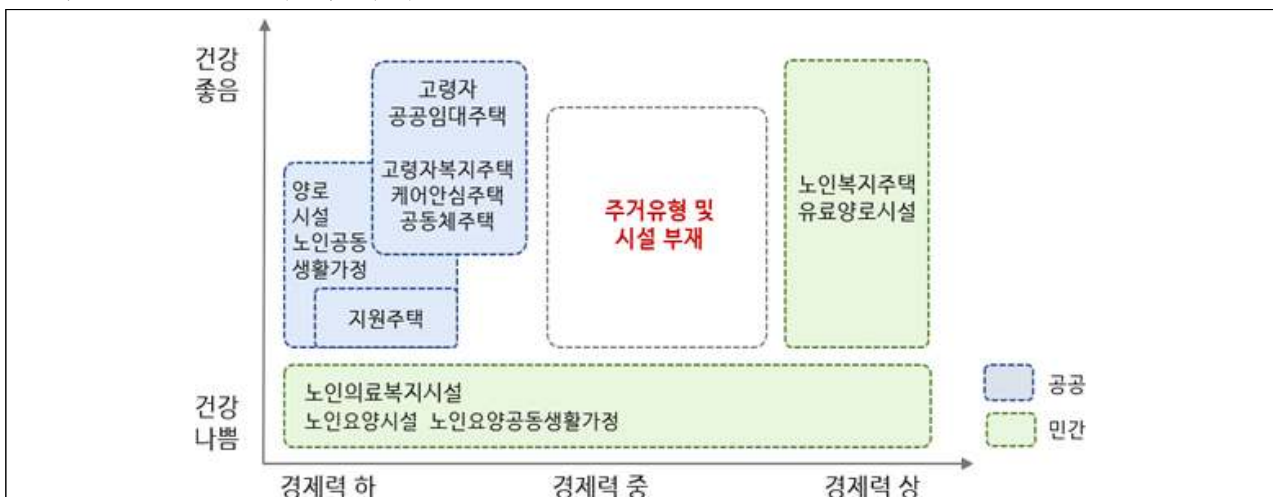
자료: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과천도시공사, 62쪽

1.3.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홍이경 BK 학술연구교수는 고령자 서비스 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공급대상 및 공급 주체 확대를 제안하였다.

공급대상의 확대에는 수요는 가장 많지만, 공급은 가장 적은 중산층에 대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림 6-8> 고령자 주거시설 분포도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도시공사, 92쪽

또한 제3섹터와의 협력 등 공공-민간 기관의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공급주체 확대와 공공영역에서의 지자체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그림 6-9> 위스테이 사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관협력)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 도시공사, 93쪽

둘째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으로 현금흐름이 부족한 한국 노인세대의 노인 주거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인세대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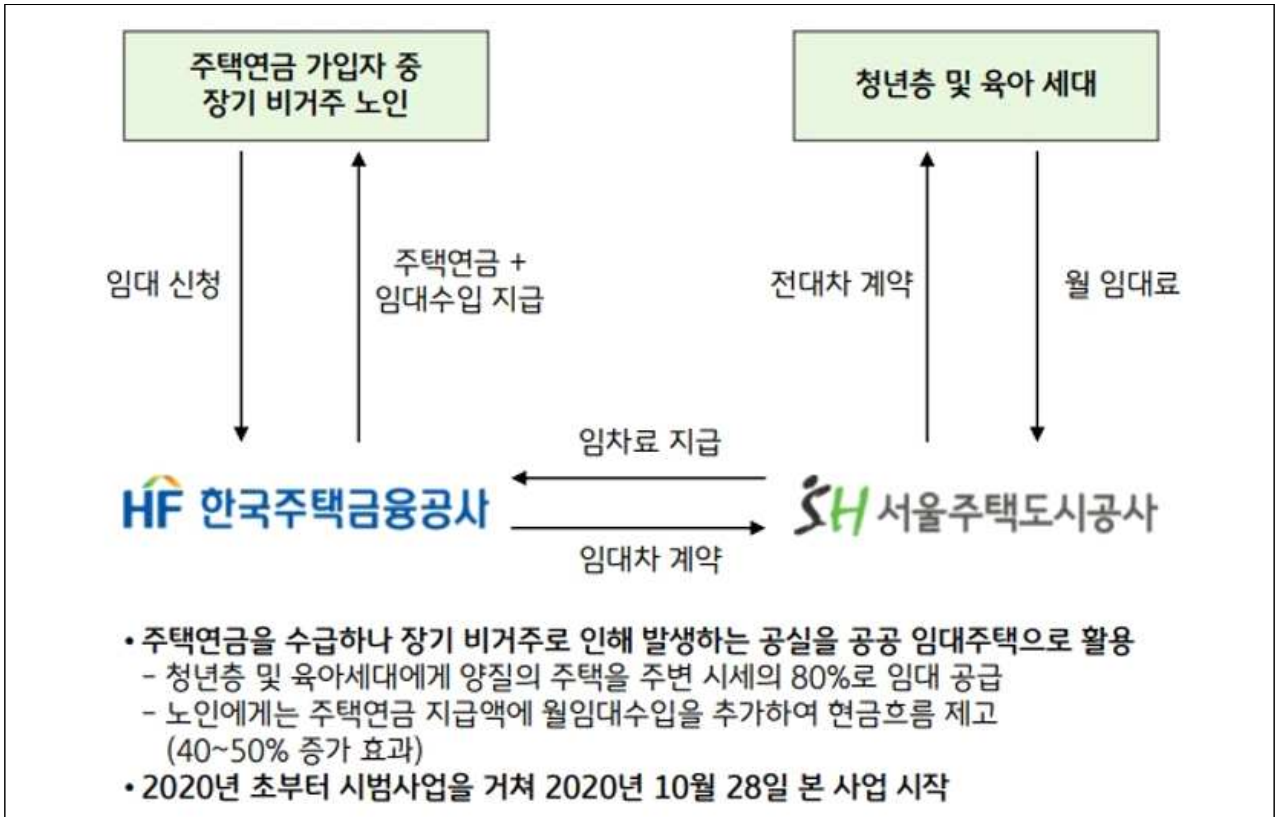
<표 6-1> 노인세대의 자산구성

			(단위: %)				
가계자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부동산 관련 자산			73.0	29.3	38.4	52.2	60.4
금융 자산	현금.예금		12.3	9.0	32.7	13.3	8.7
	금융 투자 상품	주식	4.5	23.5	5.9	4.6	6.3
		채권	1.4	5.6	1.1	0.3	0.03
		펀드	0.8	8.5	3.0	1.0	0.5
	보험.연금		7.8	22.1	16.4	26.9	22.8
	기타		0.2	1.9	2.5	1.6	1.2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 도시공사, 94쪽

노인세대의 자산을 유동화한 구체적인 사례로 주택연금가입주택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으로 서울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림 6-10>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21.)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 도시공사,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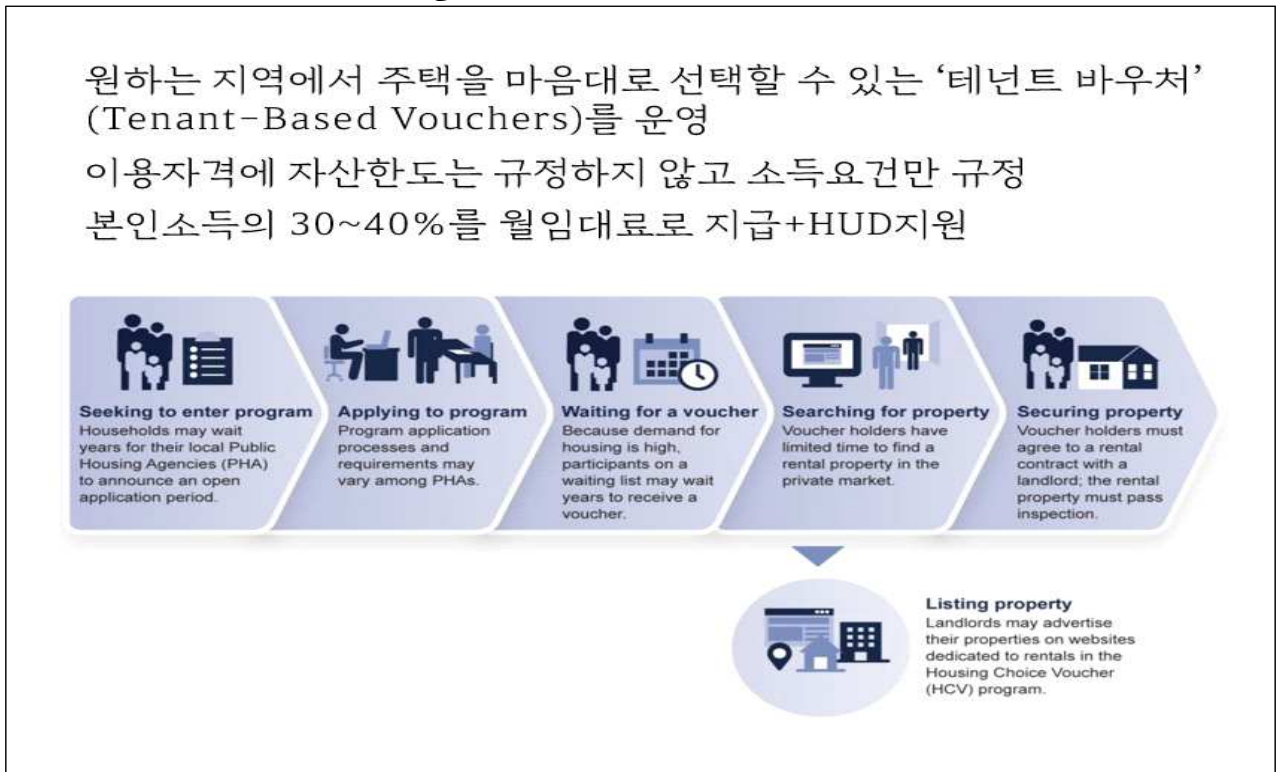
길어진 시대수명으로 인해 이용료 마련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 노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바우처 제도 등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2>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관련 현황

[부가가치세]
현재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전기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광열비 감면혜택이 있으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면혜택 미적용
- 여름철, 겨울철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부담완화 필요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 도시공사,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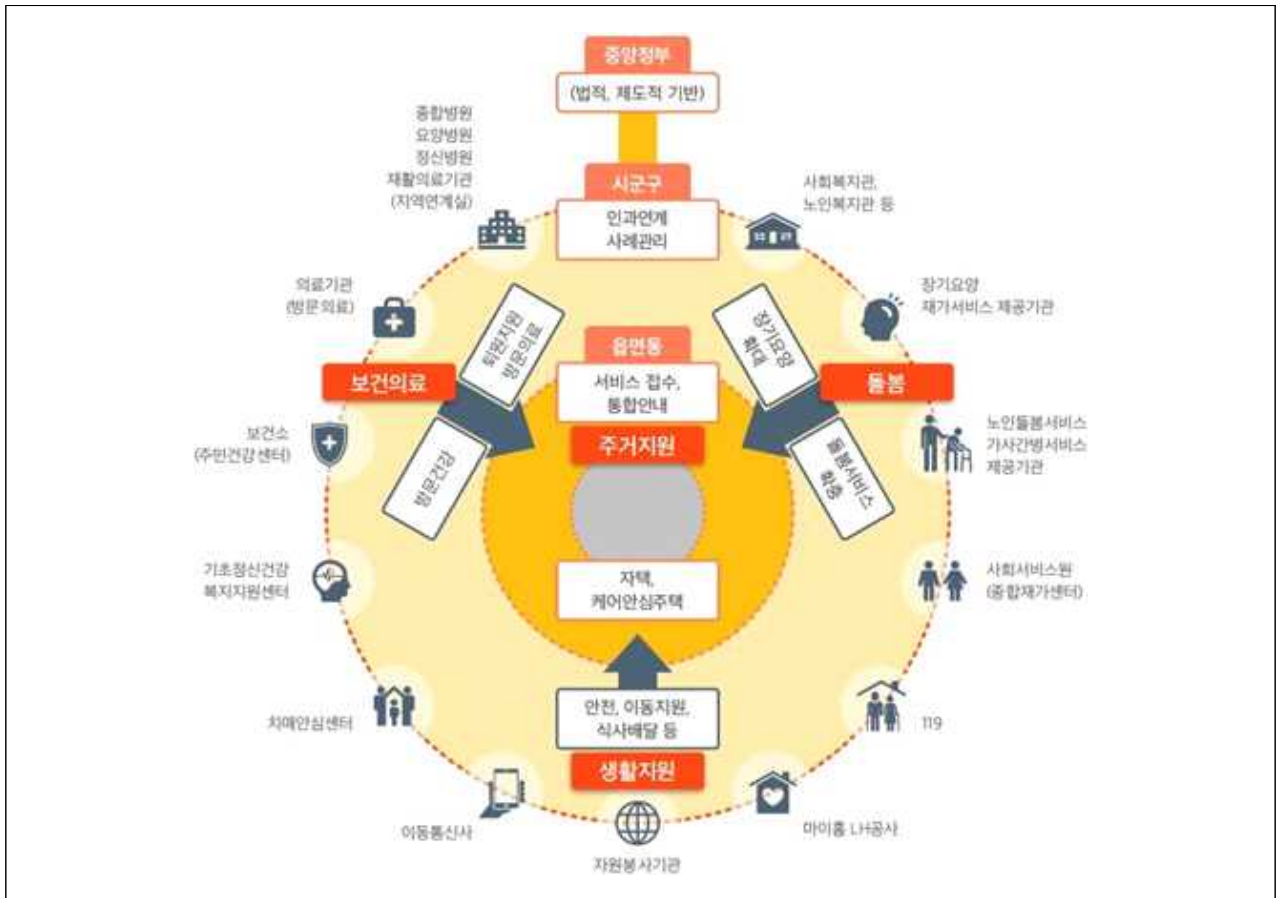
〈그림 6-11〉 미국의 Housing Voucher제도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 도시공사, 95쪽

마지막으로 노인주거와 연계된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활용방안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소개하여 공공과 민간 자원이 연계된 돌봄과 요양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 케어제공과 서비스 전문인력 활용 사례로 하남시의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SH의 ‘공동체 코디네이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서비스코디네이터’를 소개하였다.

<그림 6-12>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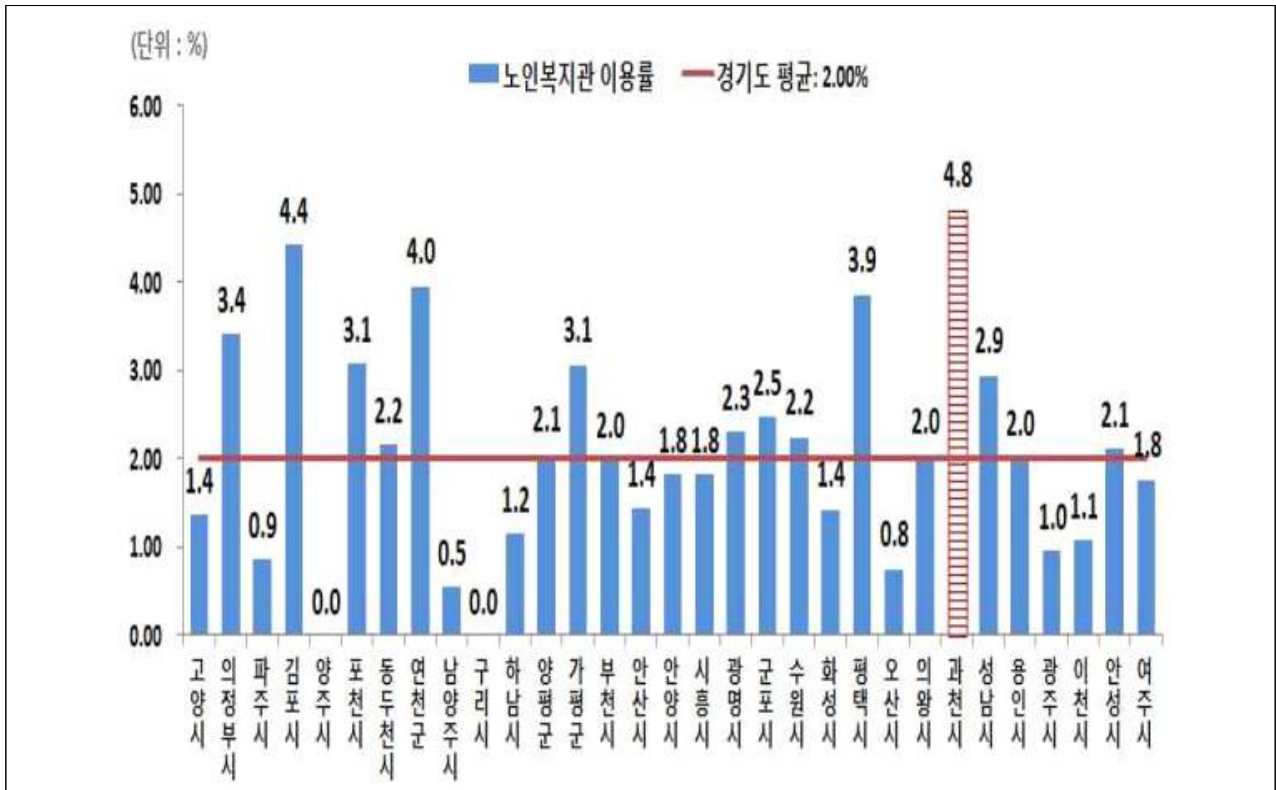


자료: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천시 도시공사, 96쪽

1.4.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방안 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학술세미나(2021. 12. 3.)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한 유호근(과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균이용률(2%)과 비교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이용률(4.8%)과 앞으로 과천시 도시개발 등으로 노인복지관 수요자 증가를 예상하며 과천시 내 노인복지관 설치목표를 3개소로 제시하며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첫째, 지역특화 및 활성화 기능 강화, 둘째, 기존 노인복지관의 분관형태로 운영되는 신규 노인복지관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셋째, 과천시가 ‘활기찬 노년과 정든 곳에서 나이가 들어감을 주요 가치로 여기고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하는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림 6-13>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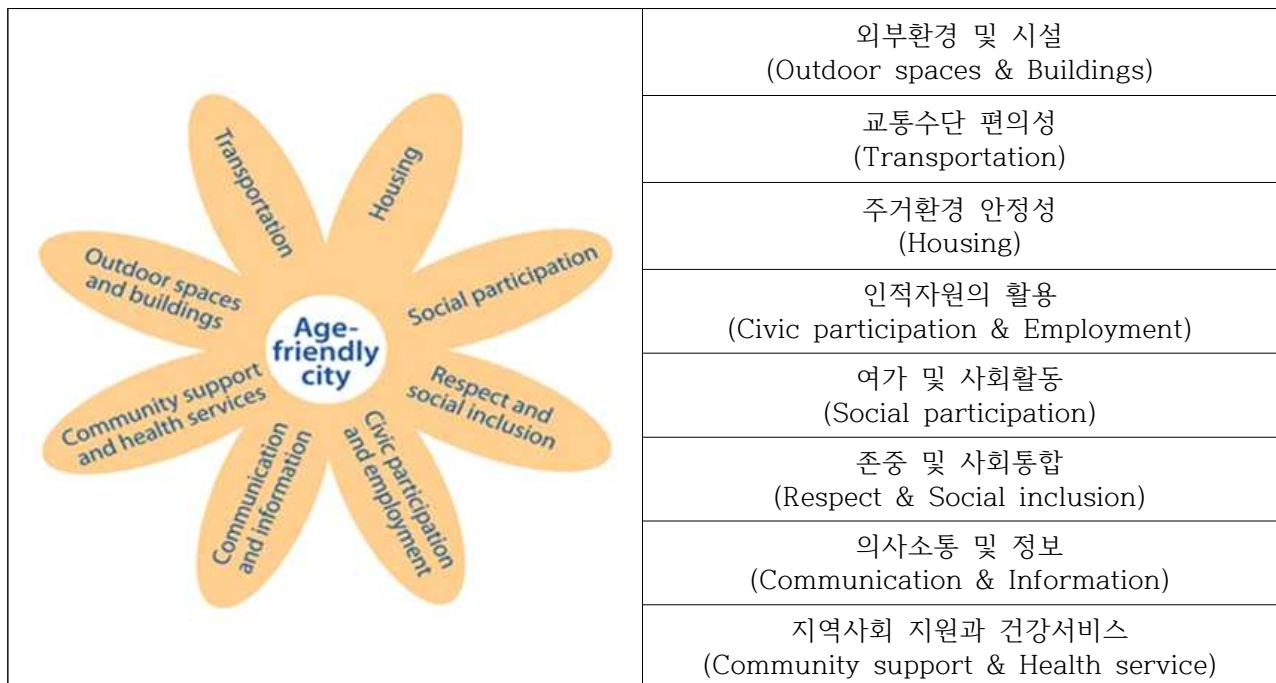
자료: 유효근, (2021),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 과천시노인복지관, 13쪽 재인용

윤호중(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른바 신노년(新老年)에 주목하고 평생교육의 소외계층 발생과 편중된 서비스이용을 해결하기 위한 평생학습총량제 도입과 평생교육사례관리를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노인복지관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지역 내 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춘남(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 팀장)은 시설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아웃리치(Outreach: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령자가 가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 되는 ‘탈시설화’를 통해 다양한 여가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6-14〉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자료: 김춘남. (2021).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 과천시노인복지관, 48쪽 재인용

제2절 지역사회 의견

과천도시공사가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한 정책제언 세미나(2021. 9. 15.)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고금란(과천시의회 의장)은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책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령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과 신내의료안심주택의 장점을 적용한 복합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활동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단절 없는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 간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노인주거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립형태의 노인주거복지 전달 조직을 제안하였다.

유호근(과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고령자의 삶 전반에 미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주거복지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의 외부환경에 발맞춰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기준에서 과천시 고령친화수준은 사회적 영역과 서비스 환경 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이상의 수준이나 물리적 영역에서 평균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어 노인주거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개발로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해 확대될 과천시의 노인복지해결을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조문성(과천도시공사)은 과천시의 2026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20.7%로 예상하고 초고령 시대 진입을 언급하였다. 다만,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초고령자 비율증가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거 등과 관련된 고령자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노인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노인주거와 관련해서 주택이 소유목적이 아니라 기능이 목적이 되는 주거복지정책과 일률적인 공유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아닌 고령자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구독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문가가 활동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과천시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해법 도출을 요구하였다.

제7장

결론

제7장 결론

제1절 종합

지금까지 ‘Aging in Place 실현을 통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제언’을 위해 많은 내용을 다루었다.

연구개요에서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과천시는 물론이고 애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고 굳어질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의 변화 양태를 근거로 고령자에 대한 공적 돌봄 수요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고령자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고령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익숙한 장소인 살던 곳에 남아서 계속 생활하는 이른바 ‘AIP’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노인주택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인주거정책 제언사항 발굴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노인복지관이 각각 주최한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를 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한 점은 기존의 타 연구활동과 차별화되는 방법이다.

제2장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와 「2021 고령자 통계」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2021년도 고령자 통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이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거주기간이 길고 시설이 노후 되어 주택만족도는 일반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고령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생활하

기에 편리한 주택개조와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되었다.

제3장에서는 노인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AIP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고령화에 따른 주거 욕구 변화, 노인을 위한 주거형태, 배리어 프리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등과 같은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등 노화에 따른 적절한 주거환경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AIP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칙과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강조하였다.

제4장에서는 노인 대응 주거복지정책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거지원 흐름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노인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거와 복지가 결합한 고령자서비스주택을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택은 물론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적 지원,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내 주거지원서비스 현황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과천시 노인주거와 서비스 지원현황을 조사하였다.

과천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부터 노인복지와 관련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과천시 시정설계 2021’, ‘과천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헬스케어 스마트 실버주택단지 조성, 요양형 건강센터 조성,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고,

무장애 원스톱 서비스 지원, 융복합형 노인웰니스센터 조성, 과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파악되었다.

‘과천시 시정설계 2021’에서는 시립요양원 건립, 효행장려금 및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설명하였다.

‘2022년 과천시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총 12건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식사지원,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과천도시공사와 개관 20주년을 맞은 과천시노인복지관이 각각 주최한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에서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사와 시민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과천도시공사가 주최한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영역에서 첫째, 양적으로 부족한 노인주거복지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자 대응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특히 중산계층이 많은 과천시임에도 저소득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주거비지원 정책 등 앞으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실행과제로 매입임대 활용과 정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중간계층을 위한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용 주택개발을 제안하였다(정소이, 2021).

둘째, 실질적인 노인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 주거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었으며,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노인 주택개조 사업 방향과 다양한 운영사례가 소개되었다(이용민, 2021).

셋째, 수요는 가장 많지만, 공급은 가장 적은 노인 중산층에 대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제3섹터와의 협력 등 공공-민간 기관의 협업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으로 현금흐름이 부족한 한국 노인세대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지원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소개하여 공공과 민간 자원이 연계된 돌봄과 요양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지원 사례가 소개되었다(홍이경, 2021).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노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과 신내의료안심주택의 장점을 적용한 복합시설, 다양한 계층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단절 없는 제공,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립형태의 노인주거복지 전담조직이 제안되었다(고금란, 2021).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과천시노인복지관 유호근 관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의 외부환경에 발맞춘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논의되는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과천시 노인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소유가 아니라 기능이 목적이 되는 주거복지정책과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구독 경제적 방식의 노인복지서비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문가가 활동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 그 해법으로 제시되었다(조문성, 2021).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과천시노인복지관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첫째,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균이용률(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과천시노인복지관 이용률(4.8%)을 근거로 과천시 내 노인복지관 설치 목표를 3개소로 제시하고, 노인복지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유호근, 2021).

두 번째로는 신노년(新老年)이 이용하게 되는 평생학습총량제 도입과 평생교육 사례관리가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되었다(윤호중, 2021).

마지막으로 시설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아웃리치 활동의 필요성에 따른 고령자가 가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 되는 ‘탈시설화’를 통해 다양한 여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김춘남, 2021).

제2절 정책제언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그 귀결은 결국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주택 및 주거시설과 같은 **정주 공간 공급**, 주거 여건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이어진다.

과천시의 노인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이 4개 분야별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실질적인 노인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① 과천시 노인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2021년 11월 기준 과천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107명으로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한 숫자이다. 특히 앞으로 도시개발을 통해 15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장되는 시점을 앞둔 지금이 바로 과천시 노인 인구에 대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와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노인 인구와 특성을 비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공공서비스 대상이 되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그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해 표본조사를 통한 추세를 확인하고 예측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과 차별화된 과천시의 특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②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202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총 33 곳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에 가입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6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부천시, 성남시, 의왕시 등 4개 지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시도 GNAFCC 가입을 통하여 고령친화도시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국제 프로젝트이다. GNAFCC는 활기찬 노년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 등을 주요 가치로 삼고,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연구의 주제인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AIP 주거복지를 중심으로’에 정확히 부합한다. 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이 노력을 기울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표방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가이드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항목 점검하고, 세계 각국 도시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7-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및 주요내용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종교, 여가활동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및 편의 환경 구축 · 고령자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실현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건강 및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자료: 고령친화서울. Retrieved from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about.action>(2021. 12. 30.)인출

③ 노인주거복지행정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과천시에 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조례」와 같은 복지 관련 총론 성격의 조례와 노인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과 관련된 조례만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행정의 바탕이 되는 과천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천시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24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주거기본조례」,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고

령자서비스주택 중 과천시나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보급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② 고령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시설 보급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과천시는 2020년 3월부터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아 고령친화적인 주택 등 주거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아동,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는 설계이다. 최근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등 세대 연계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이후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비나 공사에 필요한 재정투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7-1>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

구분	분류범위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시 및 시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가로수보호덮개, 가로화분대, 배구수덮개 등
공공정보매체	정보매체, 공공미술

자료: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별표1. 재구성

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적 주택개조 활성화

우리시 통합돌봄 사업 추진 또는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노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노후주택을 고령친화적 주택으로 재탄생시켜 노인거주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노인주거공간 확보 방식은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나 사업의 초점이 주거공간 확보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고, 단기 성과중심으로 추진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노인주거공간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제시와 지속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③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고령자용 공공주택공급 확대

공공에서 추진하는 고령자서비스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이 있는데, 이중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은 주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지만,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소규모·매입임대, 돌봄·의료서비스 연계, 민간협력방식의 주택공급이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와 과천시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친환경 도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타 지자체에 비하여 보다 많은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공재정 투입부담을 낮춘 다양한 고령자용 주택개발에 유리하다. 특히 민간참여에 의한 주택공급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득수준 중간계층에 속해 있는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이며, 우리시 고령층뿐만 아니라 서울 등 인근 도시의 노인세대 유입 → 실버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노인 인구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

고령자용 공공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가구 구성원이 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이 노인가구의 필요 주거 면적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인력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7-2〉 고령자 주거 소득수준 및 공급주체별 분류



자료: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과천도시공사, 24쪽

③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① 고령자친화적인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고령자 거주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주택개조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지원 시책 시행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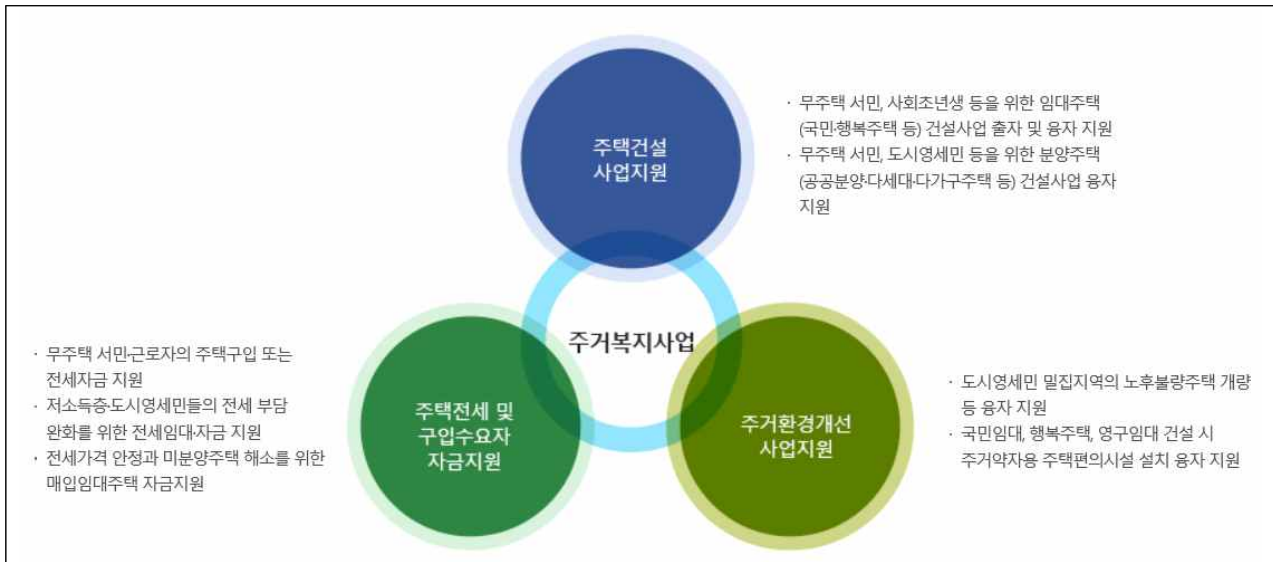
그 방법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고령자 적합 주택이나 무장애 주택의 요소를 일정비율 이상 반영할 시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을 제시한다.

다만, 사적 재산인 주택을 개조하는 데 공적지원이 투입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공적지원과 개인 부담을 적절하게 연동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

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민간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자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림 7-3〉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사업



자료: 주택도시기금. Retrieved from <http://nhuf.molit.go.kr/FP/FP04/FP0404/FP0404.jsp>(2021. 12. 30.)인출

②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받는 구독 경제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금까지의 노인주거복지의 방향은 의료, 식사, 일자리지원, 봉사활동, 돌봄 서비스 등 일률적 공유 개념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의 틀로 묶여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은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층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시가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다양화·세분화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받는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구독 경제적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제안한다.

④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

① 주거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AIP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요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 취합과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거복지, 사회복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AIP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시에서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2022년 신설 예정인 주거복지센터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주거복지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례관리는 과천시,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회적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내실화될 수 있다.

현재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경기도 4개 시(시흥, 수원, 부천, 고양) 등 많은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시 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지원을 기대해 본다.

② AIP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최근 AIP를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전문가 양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노인 거주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례관리자로서는 주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사가 가장 적임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에 더해 고령자 주거지원정책과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에 대한 전문지식, 이외에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시공 관련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노인주거복지정책을 논하는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주거지원에 있어서 공간적 지원에 덧붙여, 휴먼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휴먼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로, 고령자 재가생활-주거 돌봄-공동체성 강화 등 프로그램을 돌리고 조력하는 코디네이터 인력 즉 다시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난 4개월 동안 계속된 선행연구 고찰과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 그룹의 제안,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물은 도시정책 연구에 있어서 초보자인 도시공사 인적자원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시에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마도 초고령 사회로의 사회전개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연구보고의 대상이 된 노인주거복지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학계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보고서가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국문 논문>

- 김혜신, 박수빈. (2019).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국내·외 주택설계 지침의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1(1)
- 박은정, 채철균. (2020).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적정 주거공간 면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1)
- 박혜선, 은난순. (2020). 지역 공동체에서의 고령자 커뮤니티 공간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 고령자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Korea Science논문**, 26(2)
- 서유진. (2018). 도시재생에 있어서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오찬옥, 권현주, 김혜연. (2021). 주택사용성이 고령자의 에이징인플레이스 요구와 주택 개조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0(4)
- 이윤희, 이승혜, 김주성. (2018). 미국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CCRC)의 배치 및 단위주거 특성 - 미국 서브 오리진 주 내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CCRC)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2)

<국문 단행본>

- 김선미. (2017). 민간주거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 **도시와 빈곤**, 113
- 김춘남, 박영란, 고영호, 최성은. (201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남원석, 김수경, 백세나. (2016).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개발. 서울:서울연구원
- 민지선. (2017). 성북구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사업의 의미와 현황. **복지이슈투데이**, 7
- 서수정, 변나향, 박석환, 김경미, 이동윤. (201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서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변은주, 김성근, 정지범, 이화진, 김윤이. (2014).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송인주. (2018). 지역사회 기반 노인 주거복지서비스 모델 연구. 서울: 서울시 복지재단

이종권, 박근석, 김경미, 박진희, 이원, 이동근. (2015).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정병순, 황원실. (2018).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정소이, 권혁삼, 박준영, 최원철. (2018).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향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주보혜, 이선희, 임덕영, 김수정, 김혜진.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학봉. (2007).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 삼성경제연구소

<공공 간행물>

과천시. (2017).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

과천시. (2021). **과천시 시정설계 2021**

경기도. (2015). **경기비전 2040**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20).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사업안내**

국토교통부. (2021). **2021년 주택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21). **2021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정부 고시 / 법령 등>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 (2020)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1호, (20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45호, (2020)

<자료집>

- 유호근. (202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천시노인복지관 중장기계획 연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세미나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과천: 과천도시공사
- 유호근, 윤호중, 김춘남. (2021). 과천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특화도시(AIP) 구축을 위한 방안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과천시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학술 세미나**. 과천: 과천시노인복지관
- 이용민. (2021).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기존 주택 개량사업과 연계 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도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세미나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과천: 과천도시공사
- 정소이. (2021).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방향.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세미나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과천: 과천도시공사
- 조문성. (2021).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세미나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과천: 과천도시공사
- 홍이경. (2021).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플랫폼 ‘고령자 서비스 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세미나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과천: 과천도시공사

<보도자료>

-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2019. 1. 8). 오래된 주택 고쳐드려요! 도, 올해 저소득층 708가구 주택 개보수. **경기도청 보도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2005. 12. 26.).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주택 기준 만들어졌다 - 12월 23일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확정.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2020. 4. 1.)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3. 19.)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2021. 8. 2.).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자주 모집 - 서울 12341호, 수도권 43,356호 등 안정적 물량 지속 공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2021. 8. 13.).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1. 4. 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19. 7. 24.) 서울시, 현장 밀착형 ‘집수리 전문관’ 출범 100일 …108건 주택개량.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고경희. (2019. 7. 9.). 경기도시공사,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모집. **아파트관리신문**. Retrieved from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15>

고령친화도시 글로벌네트워크. 일반자료.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blic-of-korea(2021.12.27.)

경기주택도시공사. (2020). **햇살하우징**. Retrieved from <http://www.gh.or.kr/business/welfare/sunshine01.do>

김수현. (2016. 3. 8.).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상담하는 ‘집수리 닥터단’ 4월 출범.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8/2016030800981.html

박종일. (2020. 2. 17.). 성북구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평가 ‘매우 긍정’,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1715202960567>

서울정책아카이브. (2016. 10. 8.). **희망의 집수리 사업** Retrieved from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희망의-집수리-사업에서>

신동은. (2015. 10. 14.).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가 개소했어요, 낡은 집 고쳐 살아요.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gether_sh&logNo=22050395718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장영호. (2019. 3. 18.).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및 신축’ 지원사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trieved from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088>

조성신. (2020. 2. 10.) SH공사,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와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MOU 체결.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36625/>

최윤정. (2016. 4. 24.) 낡은 집수리 지원정보 모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60423029200004>

<홈페이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cuc.or.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 연구진 | 과천도시공사 도시전략지원단

단 장 | 조 문 성

도시전략팀 팀장 | 손 경 도

도시전략팀 대리 | 김 다 정

연구보고서 2021-01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노인주거정책 제언
- Aging in Place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발 행 일 | 2021년 12월

발 행 인 | 이 근 수

발 행 처 | 과천도시공사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전 화 | 대표전화: 02) 504-7300

홈페이지 | www.gcuc.or.kr

본 출판물은 과천도시공사의 순수한 자체연구물로

과천시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